

정책연구 2010-10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진

김 필 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 경 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강 기 흥 (경상대 교수)

최 철 호 (청주대 교수)

오 희 환 (선문대 교수)

전 성 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김 성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우 지 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정 예 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3
3. 연구 내용	3
4. 연구 방법	4
5. 연구 기간	5
제2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결과	7
제1절 법령내용	9
제2절 타당성 검토	10
1. 단위사무명 추출	11
2. 단위사무의 처리권자	15
3. 사무유형 : 현재의 사무구분 (원처리권자를 중심으로)	22
4. 타당성 검토 완료현황	39
제3절 분권추진단 검수	41
1. 검수목적	41
2. 검수범위	41
3. 검수방법 (예시: 교육과학기술부 체크리스트 일부)	41
4. 검수결과	45
제3장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47
제1절 단위사무 실태파악의 구조	49
제2절 사무배분의 기준	50

차 례

제3절 관장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51
1. 국가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51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실태	56
3. 국가 및 지방사무 배분 종합	59
제4절 사무의 성격별 배분실태	60
1.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60
2. 분야별 배분실태	61
제5절 기존조사와의 비교분석(2009년과의 비교 분석)	63
1. 도입배경	63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	64
3.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65
4. 비교분석의 결과 및 특징(종합)	68
제4장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71
제1절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	73
1. 재정립의 목적	73
2. 재정립의 내용	73
3. 재정립의 효과	74
제2절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75
1.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내역	75
제3절 기존 대비 변화(현행 사무배분과의 대비)	82
1. 국가사무 비교	82
2. 지방사무 비교	84
3. 위임사무/법정수임사무 비교	86



차 례

제5장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법령 재정비	87
제1절 지방이양사무 발굴	89
1. 사무재분류 현황	89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후속 조치	96
1. 법령 정비	96
2. 인력 및 자원 조정	97
제6장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	99
제1절 사업 추진 목적	101
제2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102
1. UI(User Interface) 변경	102
2. 연구진 / 관리자 편의기능 추가 구현	104
제3절 법령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107
1. 기존 법령입력 작업의 문제점 도출	107
2. 법령데이터 입력 고도화	107
제4절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110
1. 시스템 고도화 컨셉 설정	110
2. 주요 요구사항(CSF; Critical Success Factors)분석	111
3. 기능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111
4. 법령사무DB시스템 사이트맵 구성	112
5. 시스템 구조	113
6. 시스템 개발 현황	114

차 례

제7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건의	117
1. 연구결과의 활용	119
2. DB의 활용	120
3. 정책건의	120
4. 향후 연구과제	123
〈부록〉	125



그림 차례

<그림 6-1>	법률보기 UI 전환	103
<그림 6-2>	편의기능 추가	104
<그림 6-3>	이력보기 기능	105
<그림 6-4>	단위사무 통계 페이지	106
<그림 6-5>	DB 테이블 정규화	108
<그림 6-6>	시스템 고도화 컨셉 및 서비스 네트워크	110
<그림 6-7>	기능구현 프레임워크 설정	112
<그림 6-8>	사이트맵 구성	113
<그림 6-9>	시스템 구조	114
<그림 6-10>	시스템 개발 현황	115

제 1 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 사무총조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사무총조사 결과를 지방자치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수치들의 정확성 확보가 필요
 - 단위사무 변화의 흐름과 논리 구조의 문제점 보완 및 조정
-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 1회성 자료가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령 등의 변화를 작성된 D/B에 적용
 -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 등의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변화된 법령 등의 반영
 - '09. 7. 1 이후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 반영
 - 신규 법령 제정시 단위사무 발굴

2. 연구 범위

- 2009년도 법령상 사무 총조사 결과의 타당성 검토
-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3. 연구 내용

- 법령입력사항 검토

- 근거 법령 조정 : 단위사무와 근거 법령의 정확한 매치상태 점검
특히, 시행령 및 시행 규칙과 단위사무의 연결상태 점검
- 법령의 변화사항 점검 : 개정된 법령이 따른 단위사무 변경
신설된 법령에 따른 단위사무 추가 발굴
폐지된 법령 관련 단위사무의 삭제
- 단위사무의 명칭 검토
 - 단위사무의 성격이 불분명한 명칭 보완
 - 부적절한 단위사무 명칭 수정 등
- ‘현행 사무구분체계’에서 ‘향후 사무구분체계’로 변화되는 과정 점검
 - 처리권자의 구분의 타당성 검토
 - 처리권자와 사무성격의 합치 여부 검토
예 : 원처리권자가 시도지사인데 국가사무로 분류한 경우의 수정
- 기관위임사무 목록 재검토
 - 누락된 기관위임사무 추가 발굴
- 법정수임사무 재검토
 - 세부적인 기준 점검 및 보완
 -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재 분류
- D/B 성능 제고방안
 - 단위사무 입력시스템 고도화
 - 법령입력 프로세스 변경 및 DB 정규화
 - 대국민 서비스 준비

4. 연구 방법

- 2009년도 조사내용의 타당성 검토
 - 1단계 : 과제를 4개 소과제로 구분

- ① 법령입력사항 검토 과제
 - ② 단위사무의 명칭 검토 과제
 - ③ 현행 사무유형 검토 과제
 - ④ 기관위임사무 목록 재검토 및 법정수임사무 재검토
 - 2단계 : 소과제별 담당인력 배정 및 책임 수정
 - 3단계 : 작업 분량 적정 배분
 - 월별 작업 분량 배분 - DB상 입력된 중앙부처 단위로 배분
 - 4단계 : 작업진행 상황 점검
 - ① 1주일 단위로 작업한 내용을 소과제별로 취합
 - ② 격주로 연구진 검토회의 - 월 2회 2째, 4째 금요일
- DB유지관리 및 서비스제공방안
- 1단계 : 단위사무 입력시스템 고도화
 - 기존 시스템 오류 수정 및 보완
 - 단위사무 입력시스템 UI 변경
 - 사무작업 이력, 사무작업 통계 등 기능 추가
 - 2단계 : 법령 DB 입력 고도화
 - 법령입력 프로세스 변경 및 입력방식 고도화
 - 법령DB 테이블 정규화 및 DB 스키마 변경 등
 - 3단계 : 대국민 서비스 준비
 - 각종 검색기능 보완
 - 전반적 디자인 재구성
 - SSL 보안 계층 도입
 - 출력 인터페이스 개선

5. 연구 기간

- 과업기간 : 2010. 4. 1 - 2010. 12. 31(9개월)

제 2 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결과

제1절 법령내용
제2절 타당성 검토
제3절 분권추진단 검수



제2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결과

제1절 법령내용

- 법령명, 법률조항, 시행령 및 시행규칙명,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됨
- 법령상의 각 조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을 기재한 것으로, A의 단위사 무명을 추출하는 준거임
- 법령입력 완료 현황

소관부처	2009년 조항수	2010년						증감 현황
		법조항 총계1)	개정	신규 제정 (이동)	삭제2)	폐지3) (이동)	변동 없음	
국토해양부	10162	10091	1083	428	24	499(32)	8556	-71
보건복지부	4188	4173	1609	36	18	51(8)	2510	-15
노동부	2703	2689	764	37	108	51(16)	1780	-14
농림수산식품부	4090	4000	230	306	170	396(85)	3294	-90
소방방재청	1190	1222	42	41	23	9(9)	1116	32
농촌진흥청	50	70	19	20(18)	2	0	29	20
국가보훈처	751	752	8	1	69	0	674	1
특허청	298	1153	6	859(859)	56	4	232	855
문화체육관광부	1909	1844	58	70	1	135(19)	1715	-65
문화재청	284	245	3	31(18)	1	70	210	-39
환경부	2429	2346	127	74	12	157	2133	83
지식경제부	4638	4610	335	148	5	176(69)	4122	-28
교육과학기술부	4523	4519	466	59	9	63	3985	-4
행정안전부	6235	6018	806	171	64	176	4977	-217
기획재정부	4271	3976	1099	64	21	359(169)	2792	-295
법무부	10168	10273	1321	267(46)	5	162(58)	8680	105
외교통상부	760	732	189	41	2	69(30)	500	-28
방위사업청	113	50	0	0	0	63(63)	50	-63
조달청	214	220	24	6	0	0	190	6
법제처	72	72	8	0	0	0	64	0
병무청	46	156	125	128(123)	0	18(18)	26	110
산림청	651	708	52	61	13	4	582	57
중소기업청	783	782	187	46	25	47(46)	524	-1
통계청	195	185	8	0	0	10	177	-10
금융위원회	2622	2651	253	65(41)	5	36	2328	29

소관부처	2009년 조항수	2010년						증감 현황
		법조항 총계1)	개정	신규 제정 (이동)	삭제2)	폐지3) (이동)	변동 없음	
해양경찰청	253	252	25	0	0	1	227	-1
경찰청	992	981	145	7	8	18	821	-11
기상청	83	143	22	60(28)	7	0	54	60
방송통신위원회	1196	1106	61	6	7	96(32)	1032	-90
여성가족부	193	680	236	489(461)	45	2	0	487
통일부	256	278	124	22	0	0	132	22
기타	221	353	50	161(161)	0	29(29)	142	132
공정거래위원회	549	557	90	8	2	0	457	8
관세청	76	43	0	0	0	33	43	33
국가인권위원회	78	79	0	1	0	0	78	1
국무총리실	200	190	41	0	0	10	149	-10
국민권익위원회	184	179	5	1	0	6	173	-5
국방부	3634	3405	1077	141	10	370(19)	2177	-229
국세청	48	50	15	2	1	0	32	2
식품의약품안전청	33	33	12	0	0	0	21	0
총계	71341	71866	10725	898(650)	80	565(80)	5538	399

주 1) 2010년 법조항 총계 : 09년 총계+제정-폐지

주 2) 삭제 : "법령 제 1조 삭제"와 같이 법령조항에는 있지만 삭제된 법률(법령총계에 포함)

주 3) 폐지 : 법령이 폐지(이동)되어 해당 법령이 없는(이동) 경우(법령총계에 포함되지 않음)

제2절 타당성 검토

- 기존 연구를 통해 설정된 기준에 맞추어 단위사무를 추출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반복적으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지는 바, 대표적 사례에 대한 전체 회의를 거쳐 예외적 사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시켜 단위사무를 추출하였음. 첫째, 단위사무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 둘째, 처리권자로 인한 추출의 문제점, 셋째, 사무유형 판단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단위사무 추출 시 발생한 반복적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그에 타당한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단위사무명 추출

가. 기준

구분	내용	설명
1. 단위사무의 정의	- 법령상 권한과 책임 및 의무가 발생하는 처리권자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최소단위, 즉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업무단위	
2. 단위사무의 판별원칙	- 처리권자의 존재 - 처리권자의 일정한 직접적인 행위가 발생으로 대내외적 효력 보유 - 수행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	-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최종처리 권자 - 인가, 허가, 특허, 계획수립/결정, 확인, 감사조사, 연구 등(단, 일상적부수적인 접수, 작성, 실시 등 제외) - 인력과 재원 투입 필요
3. 단위사무의 판별기준	- 1개 조에서 1개 단위사무 추출	- 1개 조의 항호 그리고 관련 시행령의 조항호와의 연계 하에서 판단하되, 기능적으로 동일한 업무라면 1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단 동일 기능의 성격이라도 처리권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하고, 성격적으로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2개의 조가 연계성을 갖는 경우(동일 내용의 계획수립, 변경, 고시가 각기 다른 조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처리권자가 동일하다면 통합하여 1개 단위사무로 보아야 하고, 처리권자가 각기 다를 경우 개별 단위사무로 보아야 할 것임 - 1개 조 내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 혹은 단서적 업무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것이 절차적 규정일 경우는 1개의 단위사무로 추출하고, 행위주체가 각기 다를 경우는 별개의 업무로 판단함

구분	내용	설명
3. 단위사무의 판별기준	- 1개 조 내의 항호의 위임근거가 다른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 추출	- 각 조 내에서 항과 호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가 각기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각 조별 항과 호의 수임기관이 다르고 원처리권자와 현처리권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공동사무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 추출	- 각 조 내에서 처리권자가 20이상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단위사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사항은 당 연구원의 강기홍 박사에게 문의 후 결정함

※ 즉시 결정이 가능한 것은 본 조사에서 적용하고, 판별이 불가능하거나 결정이 어려운 것은 연구진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함

나. 검토결과

1) 검토사례 1

- 법령 :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권한의 위임, 위탁 자체를 단위사무로 만들 것인가?

- 검토결과

- “권한의 위임, 위탁” 자체는 사무가 아님. 법령이나 시행령상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무가 어디로 위임, 위탁됐다”는 내용이 나오면 사무로 분류 할 수 있음

2) 검토사례 2

- 법령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호법, 제6조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선언적 규정(“...노력하여야 한다.”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등)의 경우, 단위사무로 발굴해야 하는가 ?

- 검토결과

- 원칙적으로 단위사무가 아님. 다만, 조항안에 구체적인 사무내용이 언급되면 사무로 처리. 애매한 경우, 누락되는 것 보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판단

이 애매한 경우, 담당 연구자의 재량에 맡김

3) 검토사례 3

○ 법령 :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라 한다)의 제작·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관측시설의 설치와 관리

나.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통보

다. 지진재해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 지진과 지진해일의 대처요령 작성·활용

마.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재해의 원인 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공공기관, 소속/산하기관 등 여러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사무는 어떤 기준으로 발굴해야 하는가?

○ 검토결과

- 국가, 광역, 기초로 분류하되 뒤에 괄호 안에 소속/산하기관 포함 을 명시하도록 함
- 예) 사무명(국가: 소속/산하기관 포함)/사무명(광역: 소속/산하기관 포함)/사무명(기초: 소속/산하기관 포함)

2. 단위사무의 처리권자

가. 기준

구분	내용	예시
원처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되어진 단위사무의 경우, 위임을 한 자가 원처리권자가 되고, 반대로 위임을 받은 자가 현처리권자가 됨 ○ 장관 : 대통령, 정부, 국무총리, 정부위원회 등의 법형식을 포함 ○ 소속기관은 직속기관(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등)과 사업소 등을 의미함 ○ 산하기관은 공사, 공단 등을 의미함 	111. 장관(대통령,총리, 위원장등) 112. 특별지방행정기관 11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114. 특별시장 115. 광역시장 116. 도지사 117. 시장+군수+자치구청장 118. 50만 이상 시장 119. 시장 120. 군수 121. 자치구청장 122. 행정구장/행정시장 123. 읍면동장 124. 국가의 소속기관장 125. 시도의 소속기관장 126. 시군자치구의 소속기관장 127. 국가의 산하기관장 128. 시도의 산하기관장 129. 시군자치구의 산하기관장 130. 기타
현처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에 의하여 일정한 사무를 위임을 받은 자로서, 법규상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경우는 현처리권자인 동시에 원처리권자가 되기도 하지만, 위임사무의 경우 법령상 위임받은 자가 현처리권자가 됨 	211. 특별지방행정기관 21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3. 특별시장 214. 광역시장 215. 도지사 216. 시장+군수+자치구청장 217. 50만 이상 시장 218. 시장 219. 군수 220. 자치구청장 221. 행정구장/행정시장 222. 읍면동장 223. 국가의 소속기관장 224. 시도의 소속기관장 225. 시군자치구의 소속기관장 226. 국가의 산하기관장 227. 시도의 산하기관장 228. 시군자치구의 산하기관장 229. 기타

구분	내용	예시
최종 처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처리권자 또는 현처리권자가 시도인 경우에 작성하되, 시도의 사무위임조례나 사무위임규칙으로 시군구에 위임된 단위사만을 대상으로 함 ○ 현처리권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조례 혹은 규칙에 의하여 시군구 및 시군구의 직속기관 혹은 읍면동으로 위임하게 되면 그 위임받은 장이 최종처리권자가 됨 ○ 시도 사무위임조례와 규칙으로 재위임된 것이 아니면 체크하지 않아도 됨 ○ 반드시 시군구로 재위임된 사무는 실제 시도의 사무위임조례와 규칙을 확인한 후 체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1. 시장+군수+자치구청장 312. 50만 이상 시장 313. 시장 314. 군수 315. 자치구청장 316. 행정구청장/행정시장 317. 읍면동장 318. 국가의 소속기관장 319. 시도의 소속기관장 320. 시군자치구의 소속기관장 321. 국가의 산하기관장 322. 시도의 산하기관장 323. 시군자치구의 산하기관장 324. 민간위탁기관장 325. 기타

나. 검토결과

1) 검토사례 1

○ 법령 :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1개조에서 동일한 처리권자에게 각 호별로 사무를 세분화하여 위임·위탁한 경우 단위사무 추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

○ 검토결과

- 1개조 1개 단위사무 추출원칙이나, 위임·위탁 사무는 각 호별로 위임·위탁 근거가 다르므로, 별개의 단위사무로 추출

2) 검토사례 2

- 법령 :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규칙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쟁점사항

- 법령상 “.....의 승인·시행”으로 표기된 경우

○ 검토결과

-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없으면 분리하여 2개의 단위사무(‘승인’과 ‘시행’)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승인’만 1개의 단위사무로 함

3) 검토사례 3

- 법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11조

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쟁점사항

- 위원회(국가기관) 안에 소위원회와 관련 직제들도 사무로 구성해야 하는가?

- 검토결과

- 금융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여기에 부속된 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봐서 사무 만들지 않음. 금융위원회의 분과 소위원회 구성은 단위사무로 만들

4) 검토사례 4

○ 법령 : 국토해양부, 연안관리법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나.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다.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라.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마.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바.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사.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아.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자.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차.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카.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2.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3. 법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 변경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4.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5.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사용
6.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8.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9.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10.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 쟁점사항

- 국가가 위임한 동일사무지만 최종처리권자가 여럿으로 구분됨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의 단위사무 분류

○ 검토결과

- 최종 처리권자에 따라 동일사무라 할지라도 개별 단위사무로 분류해야 함. 연안관리법 제2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단위사무명이

동일하여 같은 사무 대상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 안에 사무 대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표시함

- 예)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국가: 국가관리항)/연안정비사업의 시행(광역: 지방관리항)/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초: 연안항)

5) 검토사례 5

- 법령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혁신도시 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의 학교 또는 같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의 학교 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장은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국공립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사무의 처리권자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검토결과

- 국공립학교장의 처리권자 표시. 초중등 교육법의 모든 업무는 교육감,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관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 고등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로 표시

6) 검토사례 6

- 법령 : 국토해양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민간단체가 처리권자인 사무는 단위사무로 발굴해야 하는가?

○ 검토결과

- 민간으로 위임, 위탁이 되었다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단위사무로 발굴하지 않도록 함

3. 사무유형 : 현재의 사무구분(원처리권자를 중심으로)

가. 기준 : 현 사무구분 체계(원처리권자를 중심)

사무구분	사무유형	사무성격
1. 국가 사무	11. 국가사무 111. 국가직접처리사무 112.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 113. 국가⇒ 소속기관 114. 국가⇒ 산하기관 115. 국가⇒ 민간위탁기관	국가사무 국가(특행)사무 국가(소속)사무 국가(산하)사무 국가(위탁)사무
	12. 단체위임사무 121. 국가⇒ 광역자치단체 122. 국가⇒ 기초자치단체 123.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24. 국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위임사무 기초(단체)위임사무 기초(단체)재위임사무 광역/기초(단체)위임사무
	13. 기관위임사무 131. 국가⇒ 광역자치단체장 132. 국가⇒ 기초자치단체장 133. 국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134. 국가⇒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관)위임사무 기초(기관)위임사무 기초(기관)재위임사무 광역/기초(기관)위임사무
	14. (국가·지방) 공동사무 141.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142. 국가+광역자치단체(장) 143. 국가+기초자치단체(장)	(국가광역기초) 공동사무 (국가광역) 공동사무 (국가기초) 공동사무
2. 지방 사무	21. 광역자치단체 자치사무 211.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212.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213.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 214.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215.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사무 광역(소속)사무 광역(산하)사무 광역(위탁)사무 광역(위임)사무
	22.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 221.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222.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 223.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224.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225.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사무 기초(소속)사무 기초(산하)사무 기초(위탁)사무 기초(위임)사무
	23. (광역·기초) 공동사무 231.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광역기초) 공동사무

나. 검토결과

1) 검토사례 1

○ 법령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위임 및 위탁)

-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1. 제12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구 및 군 소속공무원에 한한다)의 임면권 및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3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 관련 조치·교육에 관한 권한
 3.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1.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교부
 - 1의2.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동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제외한다)
 - 1의3.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2.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3.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법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4.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④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및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⑤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86조 내지 제88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하거나 갱신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 또는 변경
 2.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교부
 3.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4.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5.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6.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접수
 7.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접수 및 교부

○ 쟁점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에게 사무를 위탁한 경우 사무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 검토결과

- 공사 또는 공단은 공무원 단체는 아니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무유형을 국가>민간위탁기관 사무가 아닌 국가>산하기관 사무로 판단

2) 검토사례 2

○ 법령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 (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

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 쟁점사항

- 처리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조항은 개별 단위사무로 구분해야 하는가, 공동사무로 구분되어야 하는가 ?

○ 검토결과

- 공동사무인 경우 책임성 소지 불분명,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책임소재를 정하도록 할 것. 예를 들어 별표에 금액별로 처리권자를 나눠 놓으면 개별사무가 되지만 그러한 언급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공동사무임. 공동사무인 것은 향후 어느 한쪽으로 이양시키도록 할 것

3) 검토사례 3

○ 법령 :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동사무)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촉진법(공동사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동사무)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당해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공동사무)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법 제3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2.24, 2008.2.29> 1. 예정지구가 2 이상의 사군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2008.2.29>

○ 쟁점사항

- “공동사무”와 “공통사무”구별

○ 검토결과

- “공동사무”는 국가 혹은 광역, 광역 혹은 기초가 함께 수행하는 사무로 1개의 단위사무로 처리. “공통사무”는 동일한 성격의 사무지만 국가, 광역, 기초 모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3개의 단위사무로 처리. 법 조문상

원처리권자가 “○○장관과 시도지사는”과 같이 접속사 “... 과 ...”로 표현되는 경우, 공동사무로 처리함. “.... 또는”로 표현되면 공통 사무로 처리함.

4) 검토사례 4

○ 법령 :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시험실시권)

-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5.24>
-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1999.5.10]

○ 쟁점사항

- 시도지사가 국가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장)에 사무 위탁한 경우, ‘사무유형’에 표현이 어려움

○ 검토결과

- ‘시도지사→ 민간위탁’으로 표시하고, 단위사무명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실시{국가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탁}’으로 표시

5) 검토사례 5

○ 법령 : 국토해양부, 연안관리법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나.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다.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라.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마.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바.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사.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야.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자.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차.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카.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2.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3. 법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4.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5.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사용
6.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8.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9.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10.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 쟁점사항

- 동일사무지만 최종처리권자가 여럿으로 구분됨이 법률상 명시된 경우 단위 사무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검토결과

- 사무명이 동일한 사무라 할지라도 최종처리권자에 따라 개별사무로 분류해야 함. 000사무(국가), 000사무(광역), 000사무(기초)

6) 검토사례 6

○ 법령 : 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 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른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7.12.27]

○ 쟁점사항

- 같은 사무를 국가, 광역, 기초가 모두 수행하는 경우

○ 검토결과

- 법령상 표현 기준 : 국가와 광역 - 공동사무, 국가 또는 광역 - 개별사무. 사무의 성격이 같고,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동사무(부정불량식품의 단속: 식약청, 광역, 기초 공동 수행사무). 사무의 성격은 같지만, 영역이 다른 경우: 개별사무, 공동사무(보안사무, 직무교육, 공무원복지사무 등: 각 기관별 개별 사무). 구분이 애매한 경우: 향후 연구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사무로 합치는 것보다는 개별사무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함.
- 예)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분양을 허가한다' : 건축물분양허가(국가)/건축물분양허가(광역)/건축물분양허가(기초)

7) 검토사례 7

○ 법령 : 경찰청, 경비업법 (특별지방행정기관)

경찰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소속기관)

경비업법 (특별지방행정기관)**제4조 (경비업의 허가)**

-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소속기관)

제3조 (학칙)

- ① 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기 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1991.7.30, 2001.1.29, 2008.2.29>
-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 1991.7.30>
 1. 수업연한·학년·학과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설치·학급편제·학과별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선발고사를 포함한다)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휴학·퇴학·졸업과 상별에 관한 사항
 6. 학비보조·급여품 및 졸업 후의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에 위임되거나, 대학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쟁점사항

-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구분

○ 검토결과

- 특별지방행정기관 : 전국에 걸쳐서 일정한 관할구역 존재. 전국을 일정한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행정업무 수행.
- 예)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소속기관 : 특정지역에 하나 혹은 소수가 설치됨(불규칙적으로). 일정한 관할 구역이 없음.
-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소록도병원 등

8) 검토사례 8

○ 법령 : 국토해양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이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쟁점사항

- 대도시시장의 기초사무 중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지 못하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만 주어지는 권한들은 광역사무로 봐야 하는가?

○ 검토결과

- 처리권자를 50만이상 대도시시장으로 표시, 광역 직접처리 사무로 표시. 2개로 나누되, 광역, 광역(50만이상)으로 나눔. 포괄적으로 보면 광역사무

9) 검토사례 9

○ 법령 : 산림청, 산림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국가 및 지자체는 ~”이러한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인가 공통사무인가?

○ 검토결과

- 공동사무가 아닌 공통사무로 처리하여 국가, 광역, 기초 개별사무로 나눠 작업. 중복이 되더라도 일단은 개별사무 만들. 법의 명칭이 추상적, 선언적인 것은 사무 만들지 않음. 이후 분권위원회에서 확정, 피드백 필요

타당성 검토결과 기준변화

구분	기준변화
1. 단위사무명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위임, 위탁” 자체는 사무가 아님. 법령이나 시행령상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무가 어디로 위임, 위탁됐다”는 내용이 나오면 사무로 분류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단위사무가 아님. 다만, 조항안에 구체적인 사무내용이 언급되면 사무로 처리. 애매한 경우, 누락되는 것 보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판단이 애매한 경우, 담당 연구자의 재량에 맡김 - 국가, 광역, 기초로 분류하되 뒤에 괄호 안에 소속/산하기관 포함을 명시하도록 함. 예) 사무명(국가: 소속/산하기관 포함)/사무명(광역: 소속/산하기관 포함)/사무명(기초: 소속/산하기관 포함)
2. 단위사무의 처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조 1개 단위사무 추출원칙이나, 위임위탁 사무는 각 호별로 위임위탁근거가 다르므로, 별개의 단위사무로 추출 -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없으면 분리하여 2개의 단위사무(‘승인’과 ‘시행’)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승인’만 1개의 단위사무로 함 - 금융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여기에 부속된 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봐서 사무 만들지 않음. 금융위원회의 분과 소위원회 구성은 단위사무로 만들 - 최종 처리권자에 따라 동일사무라 할지라도 개별 단위사무로 분류해야 함. 연안관리법 제2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단위사무명이 동일하여 같은 사무 대상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안에 사무 대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표시함. 예)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국가: 국가관리항)/연안정비사업의 시행(광역: 지방관리항)/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초: 연안항) - 국립립학교장의 처리권자 표시. 초·중·등 교육법의 모든 업무는 교육감,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관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 고등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로 표시 - 민간으로 위임, 위탁이 되었다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단위사무로 발굴하지 않도록 함
3. 사무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또는 공단은 공무원 단체는 아니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무유형을 국가>민간위탁기관 사무가 아닌 국가>산하기관 사무로 판단 - 공동사무인 경우 책임성 소지 불분명,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책임소재를 정하도록 할 것. 예를 들어 별표에 금액별로 처리권자를 나눠 놓으면 개별사무가 되지만 그러한 언급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공동사무임. 공동사무인 것은 향후 어느 한쪽으로 이양시키도록 할 것

구분	기준변화
<p>3. 사무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무”는 국가 혹은 광역, 광역 혹은 기초가 함께 수행하는 사무로 1개의 단위 사무로 처리. “공통사무”는 동일한 성격의 사무지만 국가, 광역, 기초 모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3개의 단위사무로 처리. 법 조문상 원처리권자가 “○○장관 과 시도지사는” 과 같이 접속사 “... 과 ...” 로 표현되는 경우, 공동사무로 처리함. “... 또는 ...”로 표현되면 공통 사무로 처리함. - ‘시도지사→ 민간위탁’으로 표시하고, 단위사무명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실시(국가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탁)’으로 표시 - 사무명이 동일한 사무라 할지라도 최종처리권자에 따라 개별사무로 분류해야 함. 000사무(국가), 000사무(광역), 000사무(기초) - 법령상 표현 기준: 국가와 광역-공동사무, 국가 또는 광역-개별사무. 사무의 성격이 같고,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동사무(부정불량식품의 단속: 식약청, 광역, 기초 공동 수행사무). 사무의 성격은 같지만, 영역이 다른 경우: 개별사무, 공통사무(보안사무, 직무교육, 공무원복지사무 등: 각 기관별 개별 사무). 구분이 애매한 경우: 향후 연구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사무로 합치는 것보다는 개별사무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함. 예)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분양을 허가한다': 건축물분양허가(국가)/건축물분양허가(광역)/건축물분양허가(기초) - 특별지방행정기관: 전국에 걸쳐서 일정한 관할구역 존재. 전국을 일정한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행정업무 수행. 예)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소속기관: 특정지역에 하나 혹은 소수가 설치됨(불규칙적으로). 일정한 관할 구역이 없음.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소록도병원 등 - 처리권자를 50만이상 대도시시장으로 표시, 광역 직접처리 사무로 표시. 2개로 나누되, 광역, 광역(50만이상)으로 나눔. 포괄적으로 보면 광역사무 - 공동사무가 아닌 공통사무로 처리하여 국가, 광역, 기초 개별사무로 나눠 작업. 중복이 되더라도 일단은 개별사무 만들. 법의 명칭이 추상적, 선언적인 것은 사무 만들지 않음. 이후 분권위원회에서 확정, 피드백 필요

4. 타당성 검토 완료현황

소관부처	단위사무 보완결과										
	09년 사무	10년 사무	증감 현황	국가사무				지방사무			
				계	국가	위임	공동	계	광역	기초	공동
경찰청	467	448	-19	437	436	1	0	11	5	6	0
공정거래위원회	177	271	94	215	207	8	0	56	35	21	0
관세청	5	4	-1	4	4	0	0	0	0	0	0
교육과학기술부	2439	2176	-263	1421	1387	32	2	755	584	171	0
국가보훈처	546	524	-22	430	430	0	0	94	48	46	0
국가인권위원회	5	28	23	26	26	0	0	2	1	1	0
국무총리실	141	132	-9	86	86	0	0	46	23	23	0
국민권익위원회	41	139	98	78	78	0	0	61	41	20	0
국방부	2013	1222	-791	1181	1181	0	0	41	19	22	0
국토해양부	6408	7585	1177	4516	4061	451	4	3069	1656	1413	0
금융위원회	843	866	23	847	847	0	0	19	18	1	0
기상청	37	50	13	50	50	0	0	0	0	0	0
기타	52	82	30	82	82	0	0	0	0	0	0
기획재정부	2078	1680	-398	1562	1524	38	0	118	61	57	0
노동부	880	1026	146	885	882	2	1	141	72	69	0
농림수산식품부	3015	2985	-30	1823	1730	89	4	1162	521	640	1
농촌진흥청	9	64	55	54	54	0	0	10	5	5	0
문화재청	317	211	-106	126	112	13	1	85	40	45	0
문화체육관광부	1179	1376	197	829	826	3	0	547	295	250	2
방송통신위원회	424	383	-41	364	364	0	0	19	15	4	0

소관부처	단위사무 보완결과										
	09년 사무	10년 사무	증감 현황	국가사무				지방사무			
				계	국가	위임	공동	계	광역	기초	공동
방위사업청	61	3	-58	3	3	0	0	0	0	0	0
법무부	4950	4794	-156	4611	4586	25	0	183	76	107	0
법제처	29	51	22	49	49	0	0	2	1	1	0
병무청	12	129	117	114	114	0	0	15	8	7	0
보건복지부	3002	2881	-121	1542	1442	88	12	1339	564	775	0
산림청	318	788	470	526	467	59	0	262	145	117	0
소방방재청	929	1175	246	546	539	7	0	629	409	220	0
여성가족부	132	554	422	254	242	12	0	300	141	159	0
외교통상부	441	312	-129	312	312	0	0	0	0	0	0
조달청	31	180	149	132	132	0	0	48	24	24	0
중소기업청	401	546	145	361	357	3	1	185	101	84	0
지식경제부	2891	2693	-198	2057	1983	72	2	636	317	317	2
통계청	134	177	43	111	107	4	0	66	41	25	0
통일부	151	138	-13	126	125	1	0	12	5	7	0
특허청	112	394	282	390	386	4	0	4	2	2	0
해양경찰청	103	151	48	103	103	0	0	48	15	33	0
행정안전부	4843	4993	150	2037	1993	42	2	2956	1555	1399	2
환경부	2700	2211	-489	1203	1059	144	0	1008	538	470	0
총계	42,316	43,422	1,106	29,493	28,366	1,098	29	13,929	7,381	6,541	7

제3절 분권추진단 검수

1. 검수목적

-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외부 자문단에 다음과 같이 검수작업을 의뢰함

2. 검수범위

- 검수기간 : 11월 23일 - 12월 9일 (17일간)
- 검수대상 : 주요부처 10곳
- 검수위원 : 지방분권위원회 소속위원 11명

	검수부처	검수위원
1	교육과학기술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2	국토해양부	조덕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최승범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3	기획재정부	신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4	노동부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5	농림수산식품부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6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만 (한국지방경영연구원 원장)
7	보건복지부	박종관 (백석대 법정학부 교수)
8	지식경제부	모성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9	행정안전부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0	환경부	송병주 (경남대 행정경찰학부 교수)

3. 검수방법 (예시: 교육과학기술부 체크리스트 일부)

- 검수위원에게 담당 부처 체크리스트를 배포함

근거 법령	법 조 항	단위사무명	단위사무의 처리권자			사무유형 (현재·원 처리권자 기준)	새로운사무유형 (향후·원처리권자 기준)
			(원·현·최종처리권자)				
학교 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에 대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지원(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학교 급식법	제6조	학교급식 개시 보고 수리 및 변경 개시 보고 수리(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학교 급식법	제8조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 지원(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학교 급식법	제18조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회 설치·운영(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학교 급식법	제19조	학교급식 관련 식품·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및 시정명령(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학교 급식법	제21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허가·지정을 받은 자의 행정처분 요청(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학교 급식법	제25조	학교급식법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고등 교육법	제4조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시 인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고등 교육법	제5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청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고등 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 제정 및 운영 사항의 보고접수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고등 교육법	제7조	교육재정의 지원, 보조(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고등 교육법	제8조	실험실습비등의 지급조치 강구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고등 교육법	제9조	교원교류 협력 지원(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 검수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단위사무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기재함

제2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결과

근거법령	법 조 항	단위사무명	단위사무의 처리권자			사무유형 (현재:원처리권 자기준)	새로운 사무 유형 (향후:원처리권 자기준)	검토소견
			(원·현·최종처리권자)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에 대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지원(국가)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 처리사무
학교급식법	제8조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 지원(국가)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 처리사무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에 대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지원(광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교육공무원법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국가-광역 자치단체 장
고등교육법	제5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청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고등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 제정 및 운영 사항의 보고접수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국립학교 복합시설 설치(국가)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체육장 설치인가(국가)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6조	국립학교 학교헌장 접수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8조	각급학교 시설·설비·교원 보유 현황 보고수리(국가)	장관(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 사무	국가직접처리 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	현처리권자와 동일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직접 처리사무

○ 검수 완료 후, 담당연구진에게 재검토를 의뢰함. 담당연구진은 검수결과에 대해 수용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고, 수용불가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함

근거법령	법조항	단위사무명	단위사무의 처리권자			사무유형	새로운사무 유형	검토조건	재검토조건
			(원·현·최종처리권자)						
교육공무원법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국가>광역자치단체장	수용불가/교육자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등교육법	제5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청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직접처리사무	수용불가/ 다만 당 사무의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 및 광역 모두에게 사무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것으로 판단됨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국립학교 복합시설 설치(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직접처리사무	수용불가/ 장관·국립학교 명사. 단 위사무 구분제시. 이하 같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명령 및 학교용지 매입비용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군자치구의 소속기관장	현처리권자와 동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 소속기관/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소속기관/산하기관	수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	현처리권자와 동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직접처리사무	수용불가/ 위임사무는 위임받은 기관사무로 가능함(이양)
학교급식법	제8조	학교 급식에 필요한 급식 시설·설비비 지원(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수용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 급식에 대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지원(국가)	장관(대통령,총리,위원장 등 기관장)	원처리권자와 동일	현처리권자와 동일	국가직접처리사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수용

- 검수의견을 수용한 단위사무는 그에 따라 정정하고, 수용불가한 단위사무는 담당연구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기존 내용을 유지함

4. 검수결과

	부처명	검수결과		재검토결과	
		총 단위사무 수	이견이 있는 단위사무 수	수용	수용불가
1	교육과학기술부	2091	27	8	19
2	국토해양부	7554	166	1	165
3	기획재정부	1680	1	1	0
4	노동부	1054	204	15	189
5	농림수산식품부	2971	1	0	1
6	문화체육관광부	1351	177	28	149
7	보건복지부	2891	108	12	96
8	지식경제부	2692	297	20	277
9	행정안전부	4932	88	2	0
10	환경부	2207	422	10	412

○ 전체의견

- 법령, 시행령 상에 근거가 명확한 경우 검수의견 수용불가
- 사무이양과 관련한 검수의견은 추후 사무재배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검수의견 수용불가
- 검수과정에서 연구진들(사무총조사 수정보완 작업 연구진)의 작업 중 오타, 입력오류 발견됨
- 검수위원이 사무총조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일일이 법령을 보며 검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검수결과의 정확성에 한계가 보여짐
- 검수소건 건수는 개인차가 큼. 1개 부처 당 1명의 검수위원을 배정(예외: 국토해양부는 검수위원 2명 배정)하였는데, 검수소건이 400개 이상인 부처가 있는 반면, 어떤 부처는 1개에 불과함

○ 노동부 검수결과 관련

- 단위사무명 통합에 대한 지적이 많음. 처리권자가 다른 단위사무를 통합하라는 지적은 옳지 않음. 검수의견 수용불가

○ 보건복지부 검수결과 관련

- 『보건의료기본법』의 경우 기초로 이양하자는 검수의견이 있음. 전체 법률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해석한 검수의견으로 수용불가

○ 환경부 검수결과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기초직접처리사무로 하자는 검수의견이 있음. 기초와 광역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무로서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모르고 한 지적임. 검수의견 수용불가

제 3 장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제1절 단위사무 실태파악의 구조

제2절 사무배분의 기준

제3절 관장기관별 사무 배분 실태

제4절 사무의 성격별 배분 실태

제3절 기존조사와의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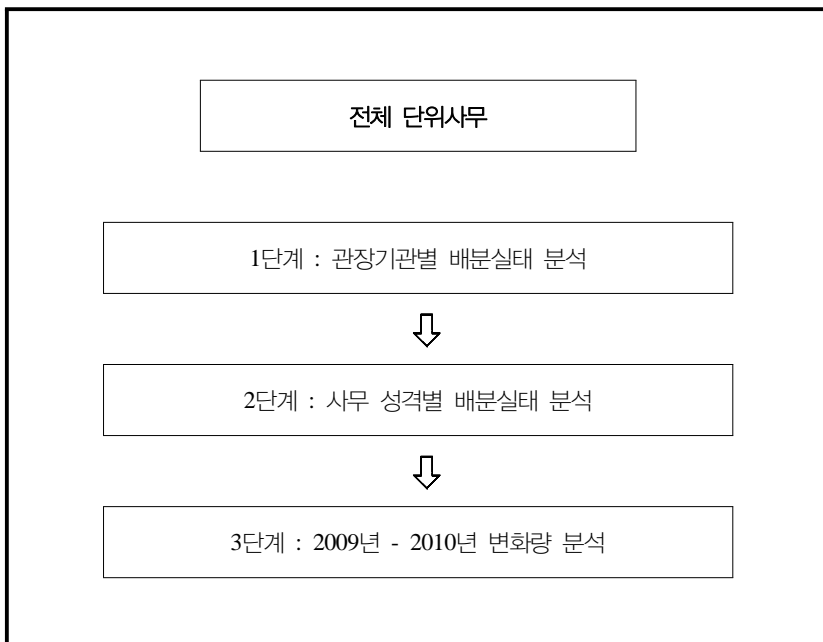


제3장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제1절 단위사무 실태파악의 구조

-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는 다음과 같은 접근구조에 입각하고 있음
 - 국가 전체법령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도출된 단위사무를 3단계의 순차적 과정에 따라 배분실태를 파악
 - 1단계에서는 관장 기관을 기준으로 국가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및 지방사무별 배분실태를 분석
 - 2단계에서는 사무성격을 기준으로 내용, 목적, 형태 및 분야별 배분실태를 분석
 - 3단계에서는 2009년과 2010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변화량을 도출



제2절 사무배분의 기준

○ 현행사무구분체계에 의한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국가사무	국가수행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지방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공동사무

제3절 관장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1. 국가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 부처별 사무배분 실태 종합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 수행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경찰청	436	1	0	437	5	6	0	11	448
	97.3%	0.2%	0.0%	97.5%	1.1%	1.3%	0.0%	2.5%	100.0%
공정거래위원회	207	8	0	215	35	21	0	56	271
	76.4%	3.0%	0.0%	79.3%	12.9%	7.7%	0.0%	20.7%	100.0%
관세청	4	0	0	4	0	0	0	0	4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교육과학기술부	1,387	32	2	1,421	584	171	0	755	2,176
	63.7%	1.5%	0.1%	65.3%	26.8%	7.9%	0.0%	34.7%	100.0%
국가보훈처	430	0	0	430	48	46	0	94	524
	82.1%	0.0%	0.0%	82.1%	9.2%	8.8%	0.0%	17.9%	100.0%
국가인권위원회	26	0	0	26	1	1	0	2	28
	92.9%	0.0%	0.0%	92.9%	3.6%	3.6%	0.0%	7.1%	100.0%
국무총리실	86	0	0	86	23	23	0	46	132
	65.2%	0.0%	0.0%	65.2	17.4%	17.4%	0.0%	34.8%	100.0%
국민권익위원회	78	0	0	78	41	20	0	61	139
	56.1%	0.0%	0.0%	56.1	29.5%	14.4%	0.0%	43.9%	100.0%
국방부	1,181	0	0	1,181	19	22	0	41	1,222
	96.6%	0.0%	0.0%	96.6	1.6%	1.8%	0.0%	3.4%	100.0%
국토해양부	4,061	451	4	4,516	1,656	1,413	0	3,069	7,585
	53.5%	5.9%	0.1%	59.5	21.8%	18.6%	0.0%	40.5%	100.0%
금융위원회	847	0	0	847	18	1	0	19	866
	97.8%	0.0%	0.0%	97.8	2.1%	0.1%	0.0%	2.2%	100.0%
기상청	50	0	0	50	0	0	0	0	5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82	0	0	82	0	0	0	0	82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 수행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기획재정부	1,524	38	0	1,562	61	57	0	118	1,680
	90.7%	2.3%	0.0%	93.0	3.6%	3.4%	0.0%	7.0%	100.0%
노동부	882	2	1	885	72	69	0	141	1,026
	86.0%	0.2%	0.1%	86.3	7.0%	6.7%	0.0%	13.7%	100.0%
농림수산식품부	1,730	89	4	1,823	521	640	1	1,162	2,985
	58.0%	3.0%	0.1%	61.1	17.5%	21.4%	0.0%	38.9%	100.0%
농촌진흥청	54	0	0	54	5	5	0	10	64
	84.4%	0.0%	0.0%	84.4	7.8%	7.8%	0.0%	15.6%	100.0%
문화재청	112	13	1	126	40	45	0	85	211
	53.1%	6.2%	0.5%	59.7	19.0%	21.3%	0.0%	40.3%	100.0%
문화체육관광부	826	3	0	829	295	250	2	547	1,376
	60.0%	0.2%	0.0%	60.2	21.4%	18.2%	0.1%	39.8%	100.0%
방송통신위원회	364	0	0	364	15	4	0	19	383
	95.0%	0.0%	0.0%	95.0	3.9%	1.0%	0.0%	5.0%	100.0%
방위사업청	3	0	0	3	0	0	0	0	3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법무부	4,586	25	0	4,611	76	107	0	183	4,794
	95.7%	0.5%	0.0%	96.2	1.6%	2.2%	0.0%	3.8%	100.0%
법제처	49	0	0	49	1	1	0	2	51
	96.1%	0.0%	0.0%	96.1	2.0%	2.0%	0.0%	3.9%	100.0%
병무청	114	0	0	114	8	7	0	15	129
	88.4%	0.0%	0.0%	88.4	6.2%	5.4%	0.0%	11.6%	100.0%
보건복지부	1,442	88	12	1,542	564	775	0	1,339	2,881
	50.1%	3.1%	0.4%	53.5	19.6%	26.9%	0.0%	46.5%	100.0%
산림청	467	59	0	526	145	117	0	262	788
	59.3%	7.5%	0.0%	66.8	18.4%	14.8%	0.0%	33.2%	100.0%
소방방재청	539	7	0	546	409	220	0	629	1,175
	45.9%	0.6%	0.0%	46.5	34.8%	18.7%	0.0%	53.5%	100.0%
여성가족부	242	12	0	254	141	159	0	300	554
	43.7%	2.2%	0.0%	45.8	25.5%	28.7%	0.0%	54.2%	100.0%
외교통상부	312	0	0	312	0	0	0	0	312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 수행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조달청	132	0	0	132	24	24	0	48	180
	73.3%	0.0%	0.0%	73.3	13.3%	13.3%	0.0%	26.7%	100.0%
중소기업청	357	3	1	361	101	84	0	185	546
	65.4%	0.5%	0.2%	66.1	18.5%	15.4%	0.0%	33.9%	100.0%
지식경제부	1,983	72	2	2,057	317	317	2	636	2,693
	73.6%	2.7%	0.1%	76.4	11.8%	11.8%	0.1%	23.6%	100.0%
통계청	107	4	0	111	41	25	0	66	177
	60.5%	2.3%	0.0%	62.7	23.2%	14.1%	0.0%	37.3%	100.0%
통일부	125	1	0	126	5	7	0	12	138
	90.6%	0.7%	0.0%	91.3	3.6%	5.1%	0.0%	8.7%	100.0%
특허청	386	4	0	390	2	2	0	4	394
	98.0%	1.0%	0.0%	99.0	0.5%	0.5%	0.0%	1.0%	100.0%
해양경찰청	103	0	0	103	15	33	0	48	151
	68.2%	0.0%	0.0%	68.2	9.9%	21.9%	0.0%	31.8%	100.0%
행정안전부	1,993	42	2	2,037	1,555	1,399	2	2,956	4,993
	39.9%	0.8%	0.0%	40.8	31.1%	28.0%	0.0%	59.2%	100.0%
환경부	1,059	144	0	1,203	538	470	0	1,008	2,211
	47.9%	6.5%	0.0%	54.4	24.3%	21.3%	0.0%	45.6%	100.0%
총계	28,366	1,098	29	29,493	7,381	6,541	7	13,929	43,422
	65.3%	2.5%	0.1%	67.9	17.0%	15.1%	0.0%	32.1%	100.0%

※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외

※ 위 분류는 원처리권자 기준임 (부록참고)

※ 국가수행사무

- 국가직접처리사무 + (국가 → 특별행정기관) + (국가 → 소속기관) + (국가 → 산하기관) + (국가 → 민간위탁기관)

※ 국가사무 중 위임사무

- 원처리권자인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 국가사무 중 공동사무

-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 (국가+광역자치단체(장)) + (국가+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사무

- 광역자치사무 + 원처리권자인 광역이 기초에 위임한 사무
- 광역자치단체직접처리사무 + (광역자치단체 → 소속기관) + (광역자치단체 → 산하기관) + (광역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사무

- 기초자치사무 + 원처리권자인 기초가 광역에 환원한 사무
- 기초자치단체직접처리사무 + (기초자치단체 → 소속기관) + (기초자치단체 → 산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 지방사무 중 공동사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경찰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97.5%이고, 지방사무는 2.5%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국가사무는 79.3%이고, 지방사무는 20.7%임
- 관세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100%이고, 지방사무는 0%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65.3%이고, 지방사무는 34.7%임
- 국가보훈처의 경우, 국가사무는 %이고, 82.1지방사무는 17.9%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사무는 92.9%이고, 지방사무는 7.1%임
- 국무총리실의 경우, 국가사무는 65.2%이고, 지방사무는 34.8%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국가사무는 56.1%이고, 지방사무는 43.9%임
- 국방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96.6%이고, 지방사무는 3.4%임
-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59.5%이고, 지방사무는 40.5%임
-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가사무는 97.8%이고, 지방사무는 2.2%임

- 기상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100%이고, 지방사무는 0%임
- 기타의 경우, 국가사무는 100%이고, 지방사무는 0%임
-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93%이고, 지방사무는 7%임
- 노동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86.3%이고, 지방사무는 13.7%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61.1%이고, 지방사무는 38.9%임
- 농촌진흥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84.4%이고, 지방사무는 15.6%임
- 문화재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59.7%이고, 지방사무는 40.3%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60.2%이고, 지방사무는 39.8%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국가사무는 95%이고, 지방사무는 5%임
-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100%이고, 지방사무는 0%임
- 법무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96.2%이고, 지방사무는 3.8%임
- 법제처의 경우, 국가사무는 96.1%이고, 지방사무는 3.9%임
- 병무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88.4%이고, 지방사무는 11.6%임
-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53.5%이고, 지방사무는 46.5%임
- 산림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66.8%이고, 지방사무는 33.2%임
-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46.5%이고, 지방사무는 53.5%임
- 여성가족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45.8%이고, 지방사무는 54.2%임
- 외교통상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100%이고, 지방사무는 0%임
- 조달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73.3%이고, 지방사무는 26.7%임
- 중소기업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66.1%이고, 지방사무는 33.9%임
- 지식경제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76.4%이고, 지방사무는 23.6%임
- 통계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62.7%이고, 지방사무는 37.3%임
- 통일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91.3%이고, 지방사무는 8.7%임
- 특허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99%이고, 지방사무는 1%임
- 해양경찰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68.2%이고, 지방사무는 31.8%임
-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40.8%이고, 지방사무는 59.2%임
- 환경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54.4%이고, 지방사무는 45.6%임
- 전반적으로 지방사무의 비중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등이 높고, 외교통상부, 관세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이 낮음

○ 부처별 사무배분 특징

-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은 부처일수록 위임사무에 비하여 공동사무의 비중이 높고, 기초사무에 비하여 광역사무의 비중이 높음
- 지방사무의 비중이 높을수록 광역사무에 비하여 기초사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실태

가.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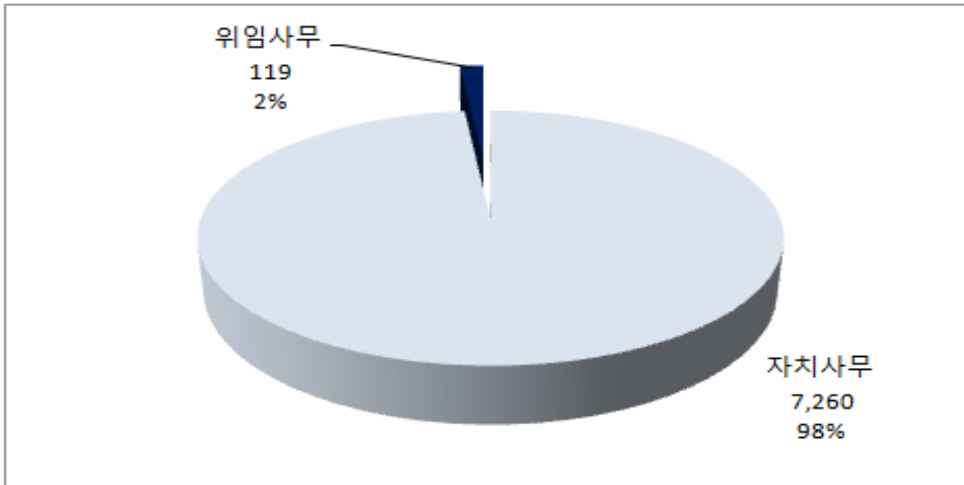
구 분	광역사무					총계
	광역자치				광역→기초	
	직접처리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사무수(건)	6,940	260	62	7,260	119	7,381
비율(%)	94.0	3.5	0.8	98.4	1.6	100.0

※ 원처리권자 기준임

-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단위사무는 총 7,381개임
- 광역자치 사무가 7,260개, 위임사무가 119개임

○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특징

- 자치사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자치사무에서는 직접처리 사무가 가장 많음



나.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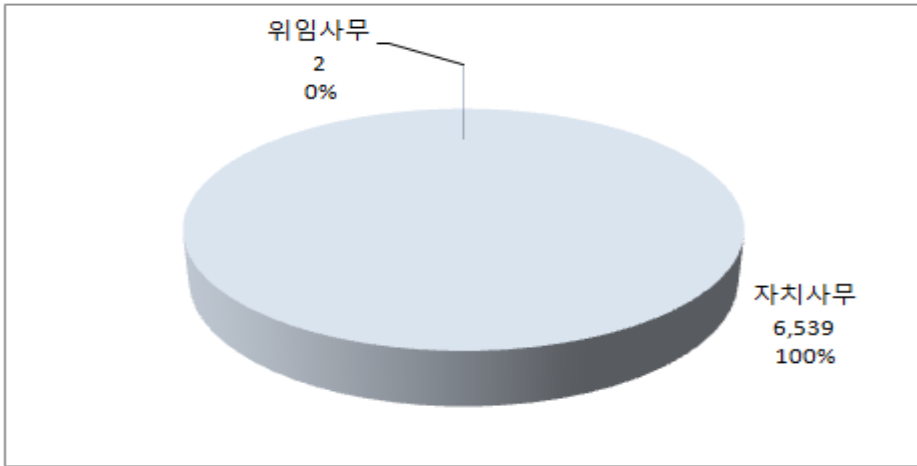
구 분	기초사무					총계
	기초자치				기초→광역	
	직접처리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사무수(건)	6,414	76	49	6,539	2	6,541
비율(%)	98.1	1.2	0.7	100.0	0.0	100.0

※ 원처리권자 기준임

-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단위사무는 총 6,541개임
- 기초자치사무가 6,539개, 위임사무가 2개임

○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특징

- 자치사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자치사무에서는 직접처리 사무가 가장 많음



다. 광역-기초 공동

○ 광역-기초 공동사무배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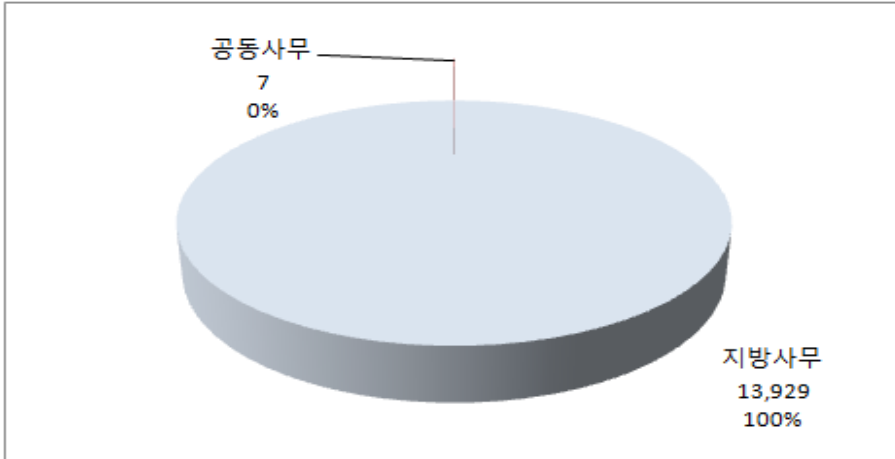
구분	공동사무
	광역+기초
사무수(건)	7
비율(%)	100.0

※원처리권자 기준임

- 광역 - 기초 공동사무는 7개임

3. 국가 및 지방사무 배분 종합

○ 현행 사무배분 실태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 계
	국가수행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직접 처리	특행 기관	소속/ 산하	민간 위탁								
사무 수(건)	20,489	2,481	4,881	515	1,098	29	29,493	7,381	6,541	7	13,929	43,422
비율 (%)	47.2	5.7	11.2	1.2	2.5	0.1	67.9	17.0	15.1	0.0	32.1	100.0

※ 원처리권자 기준임

※ 38p 참고

○ 현행 사무배분에서 총 단위사무 수는 43,422개임

- 국가사무는 29,493개로 67.9%이고, 지방사무는 13,929개로 32.1%임
- 국가사무 가운데 직접 처리사무는 20,48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처리사무는 2,481개, 소속/산하기관 처리사무는 4,881개, 민간위탁사무는 515개임
- 지방사무 가운데 광역사무는 7,381개, 기초사무는 6,541개임

○ 사무배분의 특징

- 지방사무 보다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음. 국가사무 중에서는 직접처리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지방사무에서는 광역사무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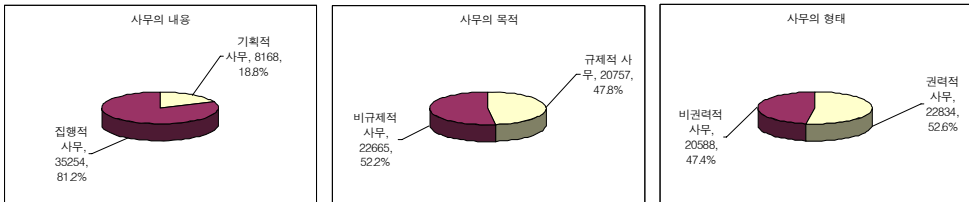
제4절 사무의 성격별 배분실태

1.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 사무의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구 분	사무의 내용		사무의 목적		사무의 형태	
	기획적 사무	집행적 사무	규제적 사무	비규제적 사무	권력적 사무	비권력적 사무
사무수(건)	8,168	35,254	20,757	22,665	22,834	20,588
비율(%)	18.8%	81.2%	47.8%	52.2%	52.6%	47.4%

※ “사무의 형태”는 복수응답임



- 내용별 분류에서 기획적 사무가 8,168건으로 18.8%, 집행적 사무가 35,254건으로 81.2%를 차지함. 집행적 사무의 비율이 높음
- 목적별 분류에서 규제적 사무가 20,757건으로 47.8%, 비규제적 사무가 22,665건으로 52.2%를 차지함. 비규제적 사무의 비율이 높음
- 형태별 분류에서 권력적 사무는 22,834건으로 52.6%, 비권력적 사무는 20,588건으로 47.4%를 차지함. 권력적 사무의 비율이 높음

○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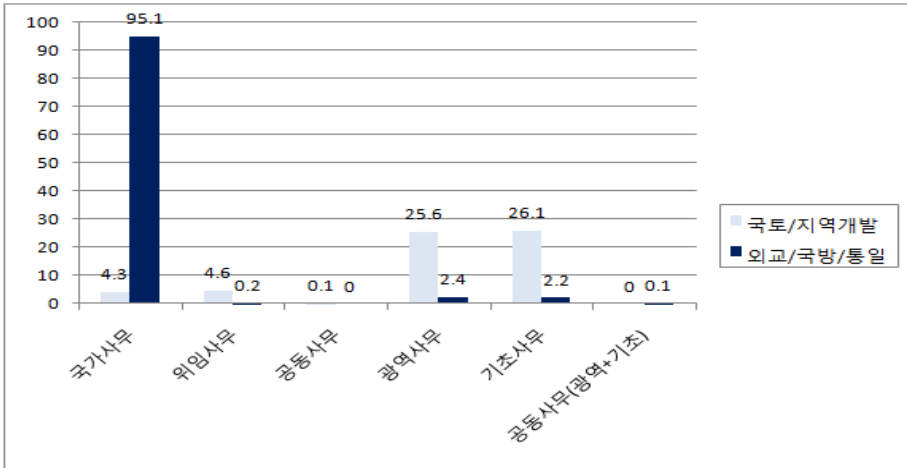
- 집행적, 비규제적, 권력적 사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2. 분야별 배분실태

○ 사무의 분야별 배분실태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합계
	국가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일반공공행정	4,597	57	2	4,656	1,549	1,291	1	12,153	16,809
	61.3%	0.8%	0.0%	62.1%	20.7%	17.2%	0.0%	37.9%	100.0%
공공질서/안전	5,833	45	0	5,878	598	449	0	12,803	18,681
	84.2%	0.6%	0.0%	84.9%	8.6%	6.5%	0.0%	15.1%	100.0%
교육	776	33	2	811	501	126	0	2,249	3,060
	54.0%	2.3%	0.1%	56.4%	34.8%	8.8%	0.0%	43.6%	100.0%
문화/관광/체육	1,005	32	1	1,038	351	350	2	2,779	3,817
	57.7%	1.8%	0.1%	59.6%	20.2%	20.1%	0.1%	40.4%	100.0%
환경보호	1,400	169	0	1,569	663	562	0	4,363	5,932
	50.1%	6.0%	0.0%	56.2%	23.7%	20.1%	0.0%	43.8%	100.0%
사회복지	2,293	83	1	2,377	637	757	0	6,148	8,525
	60.8%	2.2%	0.0%	63.0%	16.9%	20.1%	0.0%	37.0%	100.0%
보건	2,335	112	15	2,462	692	807	1	6,424	8,886
	58.9%	2.8%	0.4%	62.1%	17.5%	20.4%	0.0%	37.9%	100.0%
농업/해양수산	1,367	107	3	1,477	500	537	0	3,991	5,468
	54.4%	4.3%	0.1%	58.8%	19.9%	21.4%	0.0%	41.2%	100.0%
산업/중소기업	2,437	83	2	2,522	348	296	2	5,690	8,212
	76.9%	2.6%	0.1%	79.6%	11.0%	9.3%	0.1%	20.4%	100.0%
수송/교통	2,171	220	0	2,391	649	503	1	5,935	8,326
	61.3%	6.2%	0.0%	67.5%	18.3%	14.2%	0.0%	32.5%	100.0%
국토/지역개발	1,766	186	5	1,957	1,037	1,057	1	6,009	7,966
	43.6%	4.6%	0.1%	48.3%	25.6%	26.1%	0.0%	51.7%	100.0%
과학기술	768	4	0	772	102	74	0	1,720	2,492
	81.0%	0.4%	0.0%	81.4%	10.8%	7.8%	0.0%	18.6%	100.0%
외교/국방/통일	1,788	3	0	1,791	46	42	1	3,671	5,462
	95.1%	0.2%	0.0%	95.3%	2.4%	2.2%	0.1%	4.7%	100.0%
기타	1,178	7	0	1,185	227	183	0	2,780	3,965
	73.9%	0.4%	0.0%	74.3%	14.2%	11.5%	0.0%	25.7%	100.0%

-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국가사무는 62.1%, 지방사무는 37.9%임
- 공공질서/안전분야의 국가사무는 84.9%, 지방사무는 15.1%임
- 교육분야의 국가사무는 56.4%, 지방사무는 43.6%임
-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국가사무는 59.6%, 지방사무는 40.4%임
- 환경보호분야의 국가사무는 56.2%, 지방사무는 43.8%임



- 사회복지분야의 국가사무는 63.0%, 지방사무는 37.0%임
- 보건분야의 국가사무는 62.1%, 지방사무는 37.9%임
- 농업/해양수산분야의 국가사무는 58.8%, 지방사무는 41.2%임
- 산업/중소기업분야의 국가사무는 79.6%, 지방사무는 20.4%임
- 수송/교통분야의 국가사무는 67.5%, 지방사무는 32.5%임
- 국토/지역개발분야의 국가사무는 48.3%, 지방사무는 51.7%임
-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사무는 81.4%, 지방사무는 18.6%임
- 외교/국방/통일분야의 국가사무는 95.3%, 지방사무는 4.7%임
- 기타분야의 국가사무는 74.3%, 지방사무는 25.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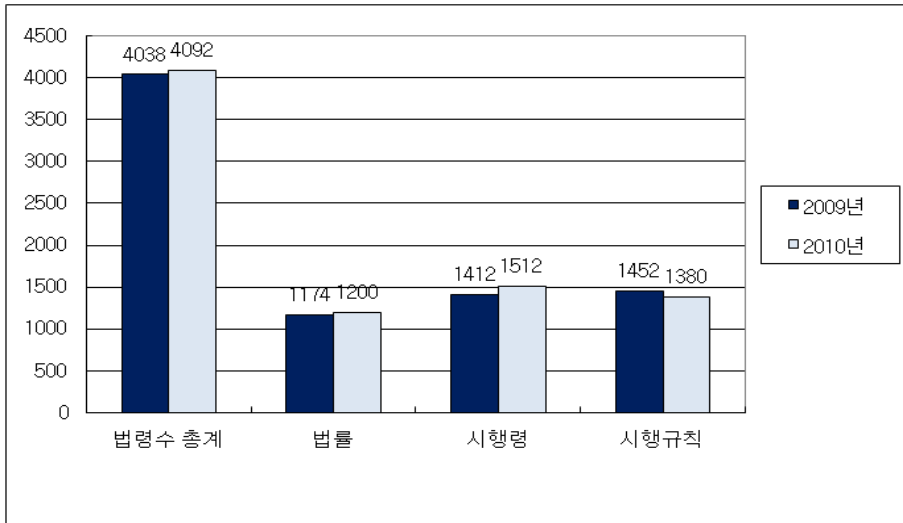
○ 분야별 배분의 특징

- 국가사무의 비중은 공공질서/안전, 과학기술, 외교/국방/통일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지방사무의 비중은 교육, 환경보호,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제5절 기존조사와의 비교분석(2009년과의 비교 분석)

1. 조사대상 법령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
법령수 총계	4,038	4,092	54
법률	1,174	1,200	26
시행령	1,412	1,512	100
시행규칙	1,452	1,380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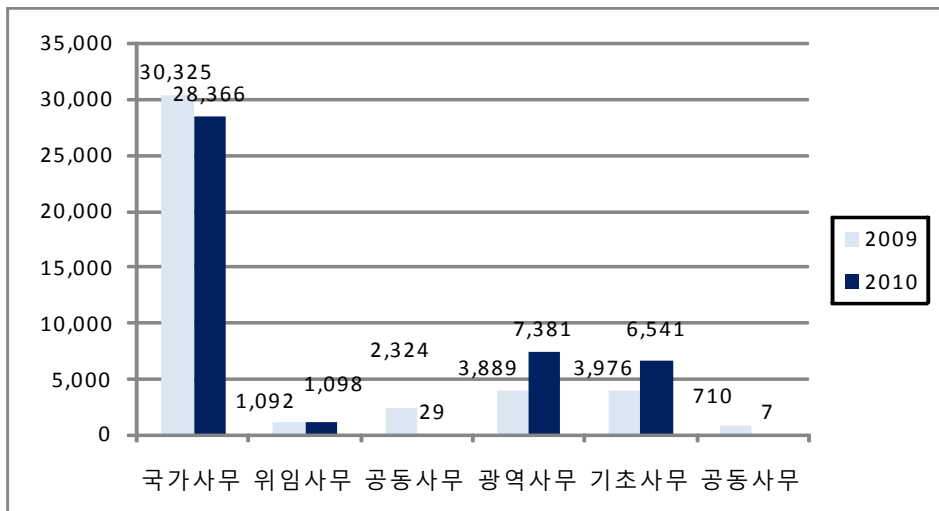
○ 증감요인 분석

- 기본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기본 규율에 대한 수요 증가
- 2010년에는 시행규칙이 감소한데 비해 법률과 시행령이 증가하였는데, 법률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규정하는 시행령의 증가에 따라 단위사무수가 2009년도에 비하여 증가됨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 계	
	국가수행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직접 처리	특행 기관	소속/ 산하	민간 위탁									
2009	사무수 (건)	19,604	3,335	6,916	470	1,092	2,324	33,741	3,889	3,976	710	8,575	42,316
	비율 (%)	46.3	7.9	16.3	1.1	2.9	5.5	80.0	9.1	9.2	1.7	20.0	100.0
2010	사무수 (건)	20,489	2,481	4,881	515	1,098	29	29,493	7,381	6,541	7	13,929	43,422
	비율 (%)	47.2	5.7	11.2	1.2	2.5	0.1	67.9	17.0	15.1	0.0	32.1	100.0

※원처리권자 기준임(p38 참고)



○ 2009년도

- 전체 사무 42,316개 가운데 국가사무가 33,864개로 80.0%이고, 지방사무가 8,452개로 20.0%임

○ 2010년도

- 전체 사무 43,422개 가운데 국가사무가 29,493개로 67.9%이고, 지방사무가 13,929개로 32.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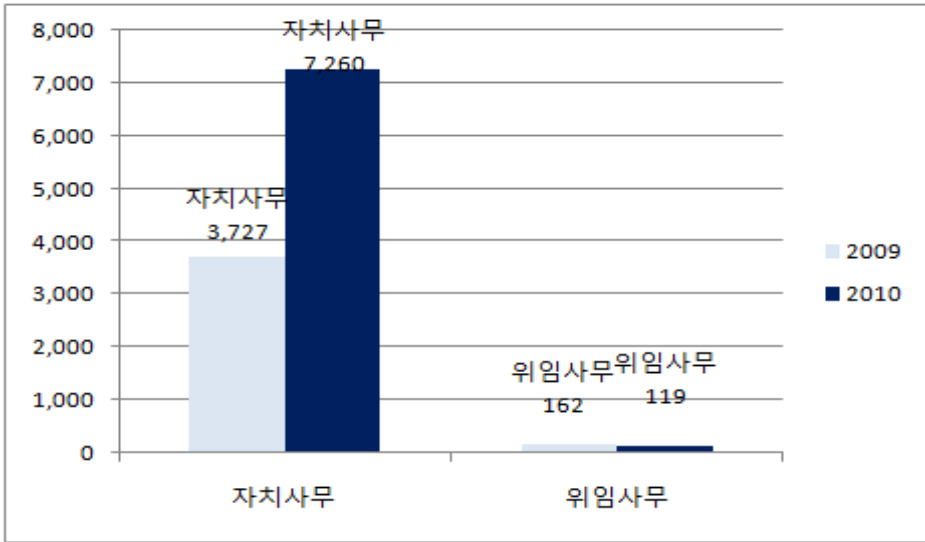
○ 증감요인

- 2009년 대비 2010년 조사결과에서 변화량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사무량에서 2009년 42,316개에서 2010년 43,422개로 1,106개가 증가되었음
- 국가사무는 2009년 보다 4,371개 줄어 29,493개임
- 지방사무는 2009년 11,991개에서 2010년 13,929개로 증가하여 5,477개가 증가함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비증변화는 주로 지방사무의 광역 및 기초의 자치사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3.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구 분	광역사무					광역→ 기초	총계
	광역자치				소계		
	직접처리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2009	사무수(건)	3,475	226	26	3,727	162	3,889
	비율(%)	89.4	5.8	0.7	95.8	4.2	100.0
2010	사무수(건)	6,940	260	62	7,260	119	7,381
	비율(%)	94.0	3.5	0.8	98.4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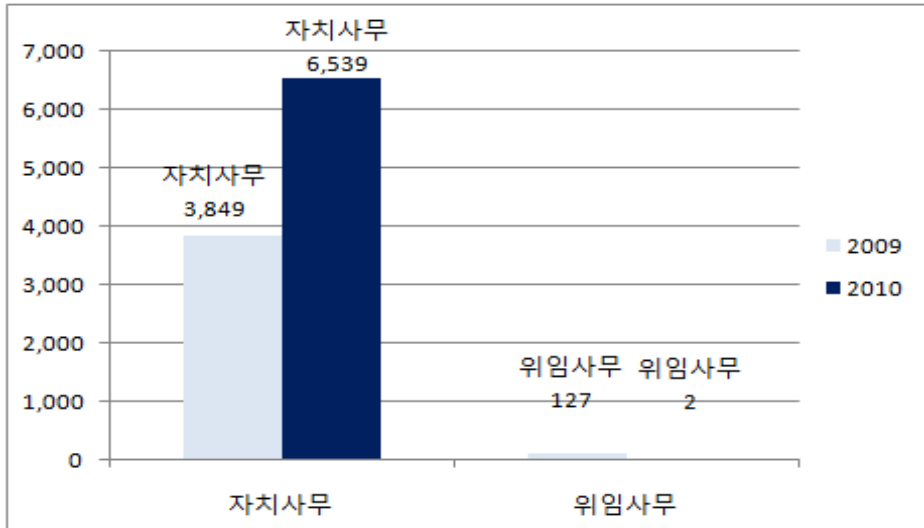
- 2009년도 : 전체 광역사무는 3,889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3,727개로 95.8%, 위임사무가 162개로 4.2%임
- 2010년도 : 전체 광역사무는 7,381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7,260개로 98.4%, 위임사무가 119개로 1.6%임

○ 증감요인

-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전체 광역사무가 3,492개가 증가함. 이는 위임사무가 감소하였지만 자치사무가 3,533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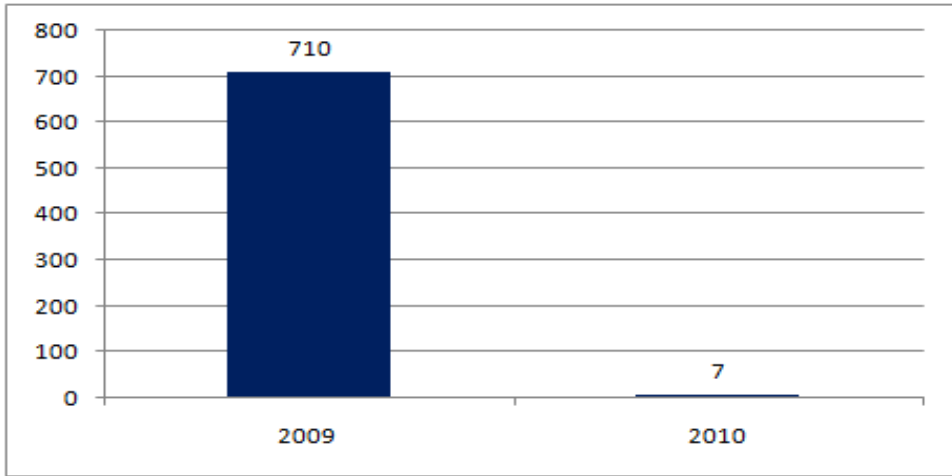
구 분	기초사무					기초→광역	총계
	기초자치				소계		
	직접처리	소속기관/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2009	사무수(건)	3,689	136	24	3,849	127	3,976
	비율(%)	92.8	3.4	0.6	96.8	3.2	100.0
2010	사무수(건)	6,414	76	49	6,539	2	6,541
	비율(%)	98.1	1.2	0.7	100.0	0.0	100.0



- 2009년도 : 전체 기초사무는 3,976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3,849개로 96.8%, 위임사무가 127개로 3.2%임
- 2010년도 : 전체 기초사무는 6,541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6,539개로 100.0%임
- 증감요인 :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전체 기초사무가 2,565개가 증가되었고, 이는 자치사무 증가에 따른 것임

○ 광역 - 기초 공동사무배분 실태

구 분		공동사무
		광역+기초
2009	사무수(건)	710
	비율(%)	100.0
2010	사무수(건)	7
	비율(%)	100.0



- 2009년도 : 광역과 기초의 공동사무는 710건임
- 2010년도 : 광역과 기초의 공동사무는 7건임
- 증감요인 : 2010년도는 2009년도에 비하여 703건 감소함

4. 비교분석의 결과 및 특징(종합)

○ 비교종합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수행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소계	광역사무	기초사무	공동사무	소계	
		직접처리	특행기관	소속/산하	민간위탁								
2009	사무수(건)	19,604	3,335	6,916	470	1,092	2,324	33,741	3,889	3,976	710	8,575	42,316
	비율(%)	46.3	7.9	16.3	1.1	2.9	5.5	80.0	9.1	9.2	1.7	20.0	100.0
2010	사무수(건)	20,489	2,481	4,881	515	1,098	29	29,493	7,381	6,541	7	13,929	43,422
	비율(%)	47.2	5.7	11.2	1.2	2.5	0.1	67.9	17.0	15.1	0.0	32.1	100.0
증감	사무수(건)	885	-854	-2,035	45	6	-2,295	-4,248	3,492	2,565	-703	5,354	1,106
	비율(%)	4.5	-25.6	-29.4	9.6	0.5	-98.8	-12.6	89.8	64.5	-99.0	62.4	2.6

- 2009년 대비 2010년 전체사무는 1,106건이 증가되었고, 국가사무는 4,248건이 감소되었고, 지방사무는 5,354건이 증가되었고, 광역사무는 3,492건이 증가되었고, 기초사무는 2,565건이 증가되었음. 공동사무는 703건이 감소하였음

○ 비교특징

- 2009년 대비 2010년의 조사결과는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율에서 지방사무가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다만, 공동사무는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함
- 이는 그동안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능이양을 추진한 성과로 판단되며, 특히 기초중심의 기능이양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이 2009년에 비하여 증가되었으나 증가량이 현저하지 않아서 지방사무의 확대를 위한 분권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광역사무 대비 기초사무의 증가와 사무건수에서 기초사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초단위 중심의 사무이양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 4 장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제1절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

제2절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제3절 기존 대비 변화(현행 사무배분과의 대비)



제4장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제1절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

1. 재정립의 목적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사무배분의 이원화
 -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
 - 지방사무는 광역자치사무, 기초자치사무, 법정수입사무로 구분
- 위임사무의 폐지 및 법정수입사무의 도입
 - 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수입사무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

2. 재정립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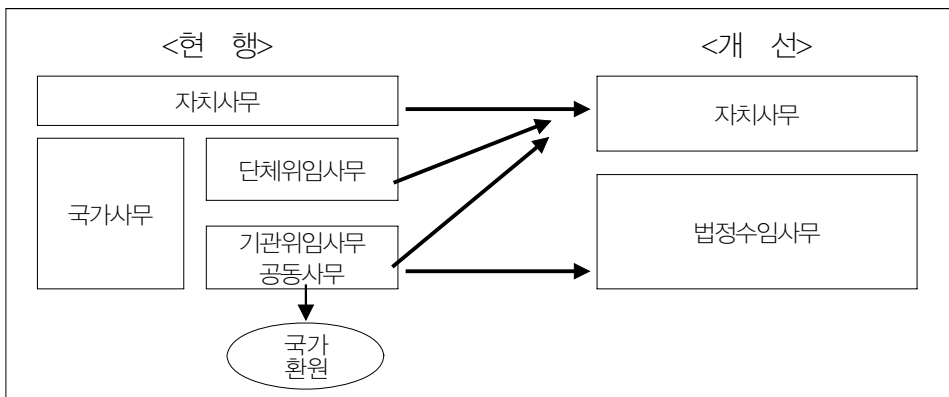
- 기초자치사무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 지역 대응성이 높은 사무
 -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광역자치사무 :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광역적인 통일성이 높은 사무
 -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국가사무 :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전국적인 통일성이 높은 사무
 - 국가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법정수입사무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무
 - 위임사무 중 지방이양이나 국가환원이 어려운 사무
 - 광역법정수입사무와 기초법정수입사무로 구분

3. 재정립의 효과

- 법정수입사무의 도입
 - 종래의 복잡한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을 수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리함
 -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사무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지원 등 재원에 대하여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중앙과 지방 관계의 재정립
 -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관계에서 대등·협력적 관계를 지향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안



제2절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1.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내역

가. 종합

○ 신규기준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63.2%, 지방사무는 36.8%로 분석됨

○ 지방사무의 경우 자치사무는 36.8%, 법정수임사무는 0.1%로 분석됨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수행 사무	법정수임 사무	소계	자치사무 (광역자치+ 기초자치)	법정수임 사무	소계	
사무수	27,053	372	27,425	15,971	26	15,997	43,422
비율(%)	62.3	0.9	63.2	36.8	0.1	36.8	100.0

※ 국가수행사무

- 국가직접처리사무 +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 (국가 → 소속/산하기관) + (국가 → 민간위탁기관)

※ 국가사무 중 법정수임사무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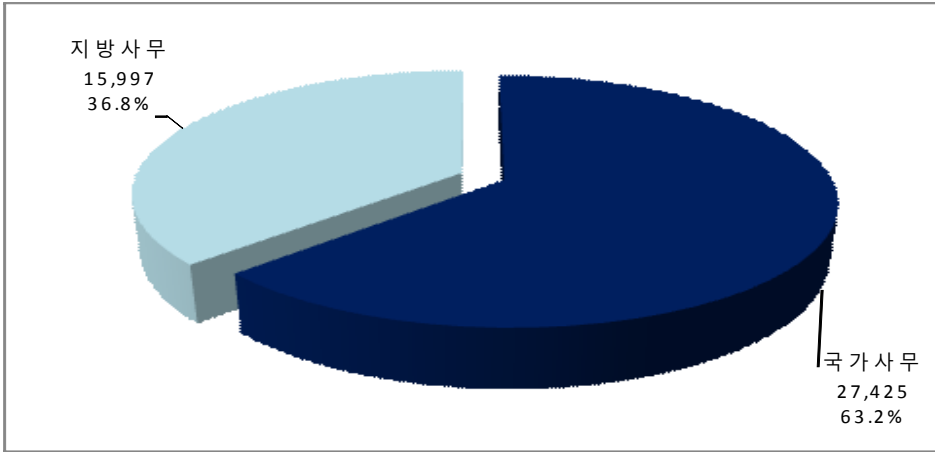
- 광역직접처리 + (광역 → 소속/산하기관) + (광역 → 민간위탁) + 50만이상시
사무

※ 기초자치사무

- 기초직접처리 + (기초 → 소속/산하기관) + (기초 → 민간위탁)

※ 지방사무 중 법정수임사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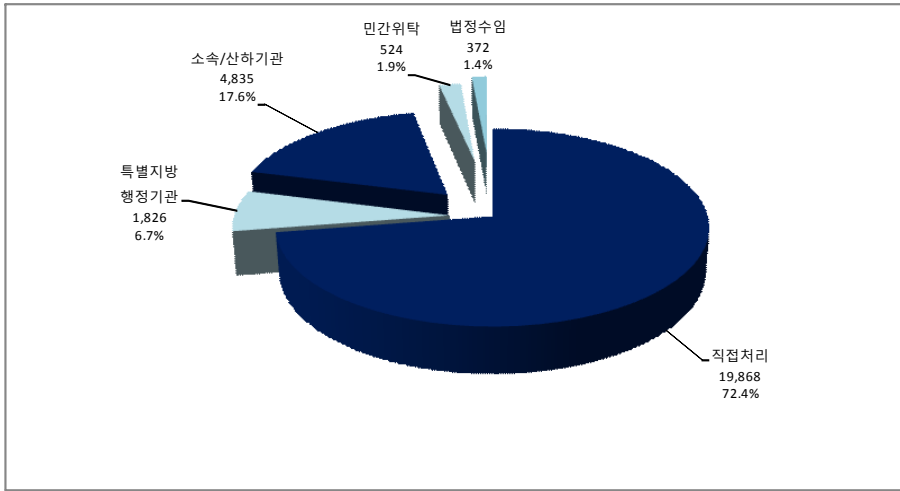
○ 재배분 사무의 특징

- 새로운 사무재배분 체계에 따라서 없어질 기관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자치사무로 전환하려고 노력함
-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와 공동사무에서 지방의 자치사무로 많은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나. 국가사무

○ 국가사무의 경우

구 분	국가사무								총계	총 사무수
	국가수행사무					법정수임				
	직접 처리	특별지방행정 기관	소속기관 / 산하기관	민간 위탁	소계	국가→ 광역	국가→ 기초	소계		
사무수	19,868	1,826	4,835	524	27,053	261	111	372	27,425	43,422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72.4	6.7	17.6	1.9	98.6	1.0	0.4	1.4	10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45.8	4.2	11.1	1.2	62.3	0.6	0.3	0.9	6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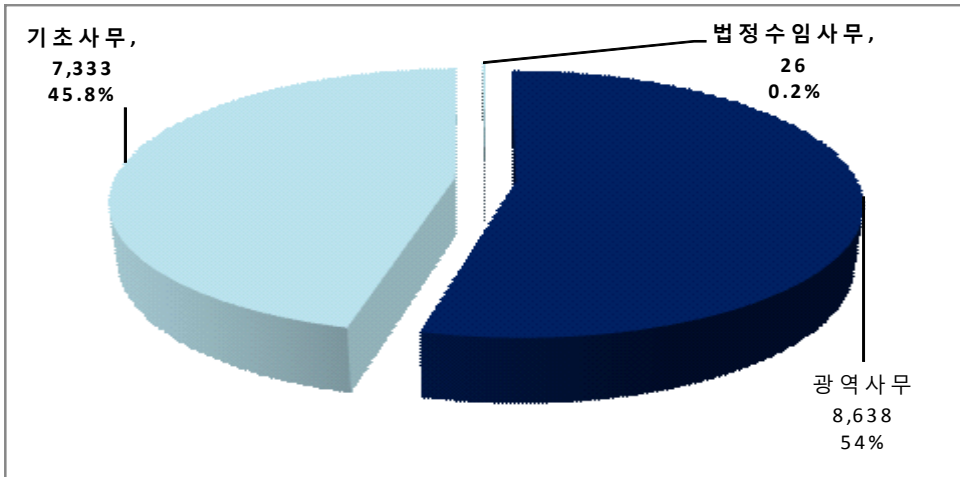
- 총 사무수 건 중 직접처리는 45.8%, 특별지방행정기관 4.2%, 소속기관/산하기관 11.1%, 민간위탁 1.9%로 분석됨
- 국사사무 중에서 국가 직접처리사무의 비율은 72.4%로 분석됨

○ 국가사무 재배분의 특징

- 국가사무 중에서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비중은 가능한 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경향에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함

다. 지방사무

구 분	광역자치사무					기초자치사무				법정수임 사무	총계	총 사무수
	직접 처리	소속 기관/ 산하기관	민간 위탁	50만 이상 시	소계	직접 처리	소속 기관 / 산하기관	민간 위탁	소계			
사무수	8,196	376	66	0	8,638	7,163	104	66	7,333	26	15,997	43,422
지방사무에 대한 비율(%)	51.2	2.4	0.4	0.0	54.0	44.8	0.7	0.4	45.8	0.2	10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18.9	0.9	0.2	0.0	19.9	16.5	0.2	0.2	16.9	0.1	36.8	100.0



- 지방사무의 재배분 실태
 - 지방사무의 총수는 15,997개인데, 그 중 광역자치사무가 54.0%, 기초자치사무 45.8%, 법정수입사무는 0.2%로 분석됨

- 광역사무의 재배분 실태
 - 총사무수 43,422건 중 광역 직접처리사무가 18.9%, 50만 이상 시 사무가 0%로 분석됨

- 기초사무의 재배분 실태
 - 총사무수 43,422건 중 기초 직접처리사무 16.5%, 소속기관/산하기관사무 0.2%, 민간위탁사무 0.2%로 분석됨

- 법정수입사무의 재배분 실태
 - 총사무수 43,422건 중 법정수입사무가 0.1%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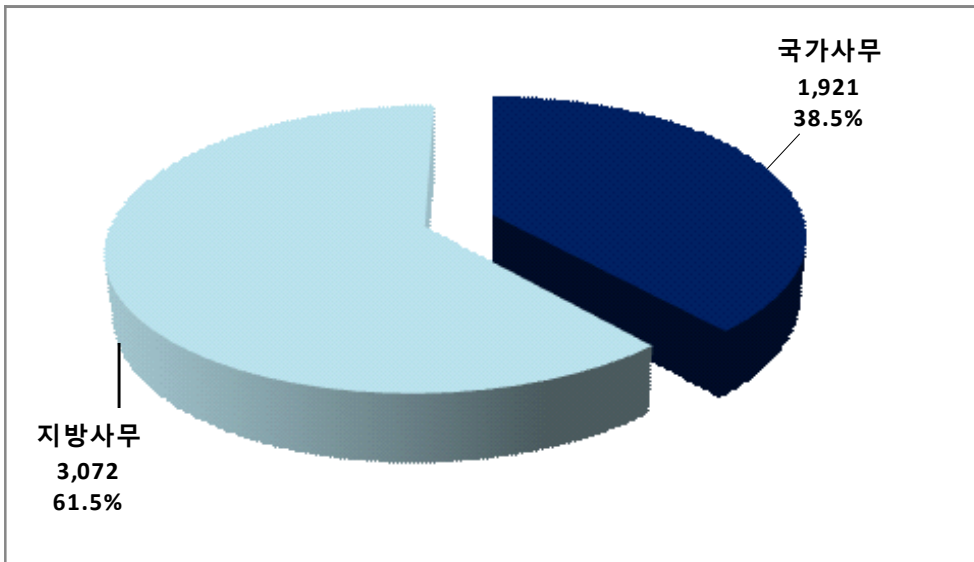
- 지방사무 재배분의 특징
 - 지방사무 중 광역직접처리사무가 가장 많은 것은 대도시권 건설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시행해야 할 사무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법정수입사무의 비율이 광역자치사무나 기초자치사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법정수입사무의 전신인 기관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자치사무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임

라. 예시: 행정안전부(예시)

○ 총괄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수 행사무	법정수입 사무	소계	자치사무 (광역자치+ 기초자치)	법정수입 사무	소계	
사무수	1,913	8	1,921	3,065	7	3,072	4,993
비율(%)	38.3	0.2	38.5	61.4	0.1	61.5	100.0



-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38.5%, 지방사무는 61.5%로 분석됨
- 지방사무의 경우 자치사무는 61.4%, 법정수입사무는 0.1%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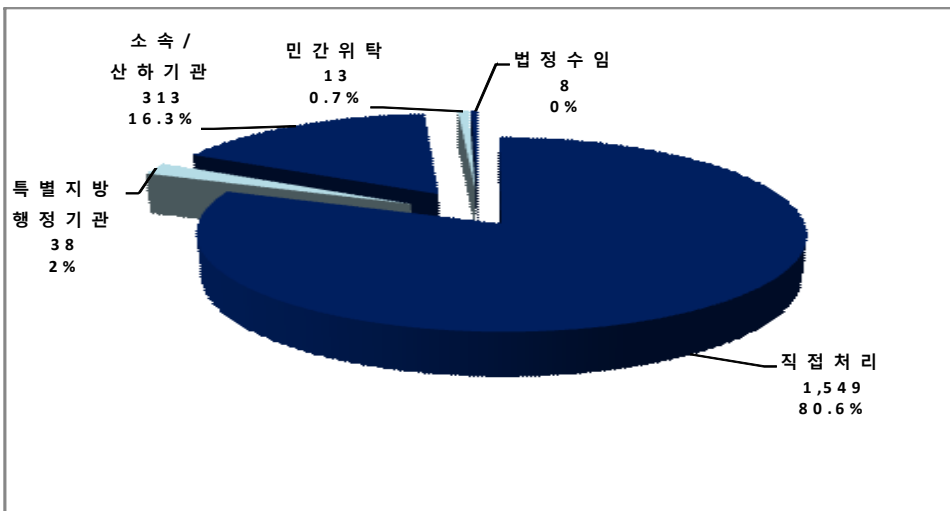
○ 국가사무

구 분	국가사무								총계	총 사무수
	국가수행사무					법정수임				
	직접 처리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기관/ 산하기관	민간 위탁	소계	국가→광역	국가→기초	소계		
사무수	1,549	38	313	13	1,913	7	1	8	1,921	4,993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80.6	2.0	16.3	0.7	99.6	0.4	0.1	0.4	10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31.0	0.8	6.3	0.3	38.3	0.1	0.0	0.2	38.5	100.0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993건 중 국가사무 1,921건의 경우, 국가직접처리 80.6%, 특별지방행정기관 2.0%, 소속기관/산하기관 16.3%, 민간위탁 0.7%로 분석됨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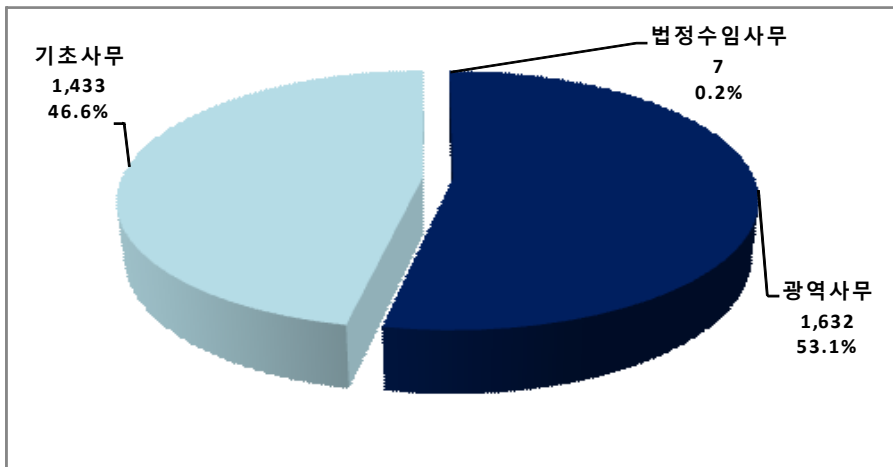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공무원을 직접 관리·감독하므로 직접처리사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방사무

구 분	광역자치사무					기초자치사무				법정수입사무	총계	총 사무수
	광역 직접 처리	소속 기관 / 산하 기관	민간 위탁	50 만이 상시	소계	직접 처리	소속 기관/ 산하 기관	민간 위탁	소계	기초 (광역→기초)		
사무수	1,559	67	6	0	1,632	1,375	50	8	1,433	7	3,072	4,993
지방사무에 대한 비율(%)	50.7	2.2	0.2	0.0	53.1	44.8	1.6	0.3	46.6	0.2	1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31.2	1.3	0.1	0.0	32.7	27.5	1.0	0.2	28.7	0.1	61.5	100

-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 3,072건의 경우, 광역자치사무 53.1%, 기초자치사무 46.6%, 법정수입사무 0.2%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993건 중 광역사무는 광역직접처리사무 31.2%, 소속기관/산하기관처리사무 1.3%, 민간위탁사무 0.1%, 50만 이상 시 처리사무 0%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993건 중 기초사무는 기초직접처리사무 27.5%, 소속기관/산하기관 처리사무 1.0%, 민간위탁 사무 0.2%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993건 중 법정수입사무는 0.1%로 분석됨



○ 특징

- 행정안전부는 지방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지방사무의 비중이 높음.
지방과의 교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사무 보다 광역사무의 비중이 높음

제3절 기존 대비 변화(현행 사무배분과의 대비)

1. 국가사무 비교

가. 변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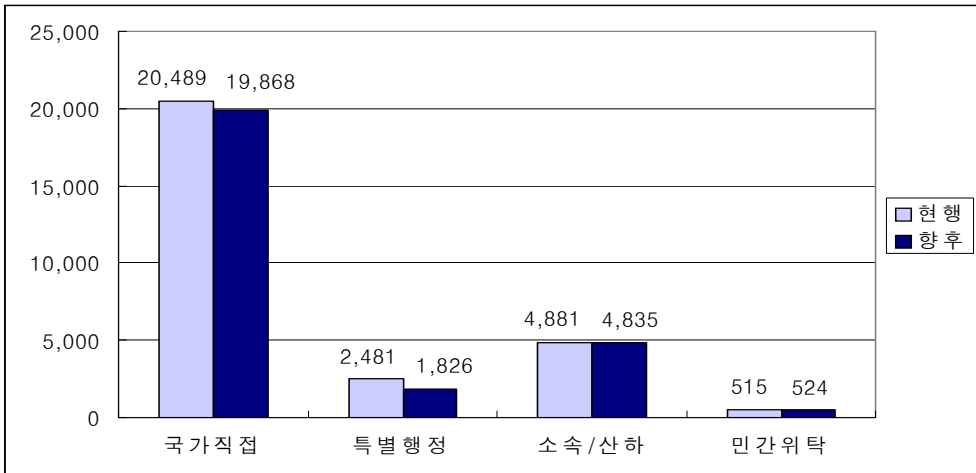
○ 현행 사무구분에 따른 비율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비율 비교

- 총사무수 43,422건 중 국가사무의 비율이 67.9%에서 63.2%로 약 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3,422건 중 국가직접처리사무의 비율 역시 47.2%에서 45.8%로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나. 변화요인 분석

- 국가직접처리사무 중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621건을 지방사무로 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처리사무 중 지방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655건을 지방사무로 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조정과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감소시키고 지방자치사무는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보임

사무구분	현행 사무구분			새로운 사무구분			
	사무수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사무수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국가 사무	국가직접처리	20,489	69.5%	47.2	19,868	72.4	45.8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	2,481	8.4%	5.7	1,826	6.7	4.2
	국가→ 소속기관/산하기관	4,881	16.5%	11.2	4,835	17.6	11.1
	국가→민간위탁	515	1.7%	1.2	524	1.9	1.2
	위임사무	1,098	3.7%	2.5	-	-	-
	공동사무	29	0.1%	0.1	-	-	-
	법정수임	-	-	-	372	1.4	0.9
	소계	29,493	100	67.9	27,425	100	63.2
총사무 수	43,422	-	100	43,422	-	100	



2. 지방사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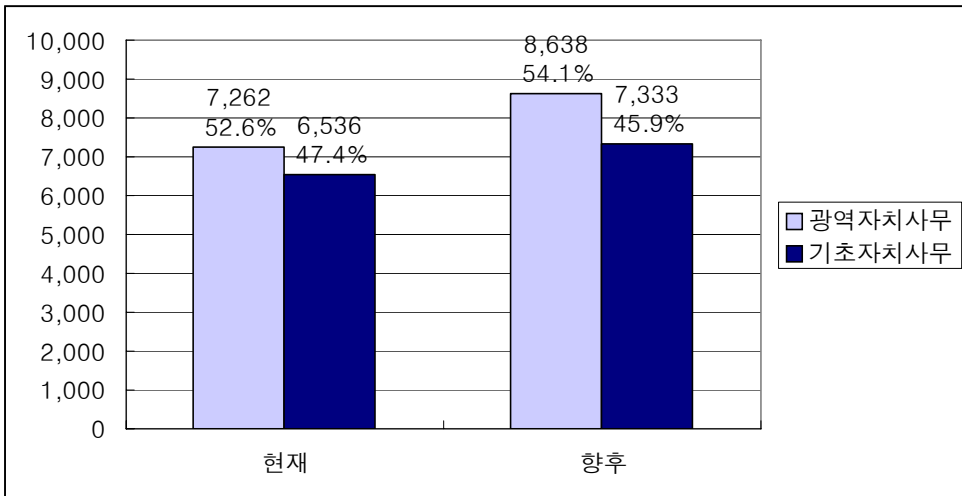
가. 변화 내용

- 총사무수 43,422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32.1%에서 36.8%로 약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3,422건 중 광역사무의 비율은 17.0%에서 19.9%로 약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3,422건 중 광역 직접처리사무의 경우 16.0%에서 18.9%로 약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3,422건 중 기초사무의 비율은 15.1%에서 16.9%로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3,422건 중 기초 직접처리사무의 경우 14.8%에서 16.5%로 약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나. 변화요인 분석

- 국가직접처리사무, 특별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
- 광역사무 중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사무구분		현행 사무구분			새로운 사무구분			
		사무수	지방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사무수	지방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지방 사무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	6,940	49.8	16.0	8,196	51.2	18.9
		광역→ 소속기관/산하기관	260	1.9	0.6	376	2.4	0.9
		광역→민간위탁	62	0.4	0.1	66	0.4	0.2
		광역→기초	119	0.9	0.3	0	0	0
		소계	7,381	53.0	17.0	8,638	54.0	19.9
	기초사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	6,414	46.0	14.8	7,163	44.8	16.5
		기초→ 소속기관/산하기관	76	0.5	0.2	104	0.7	0.2
		기초→민간위탁	49	0.4	0.1	66	0.4	0.2
		기초→광역	2	0.0	0.0	-	-	-
		소계	6,541	47.0	15.1	7,333	45.8	16.9
	공동사무	광역+기초	7	0.1	0.0	-	-	-
	법정수임 사무	광역→기초	-	-	-	26	0.2	0.1
	지방사무 수		13,929	100.0	32.1	15,997	100.0	36.8
	총사무 수		43,422	-	100.0	43,422	-	100.0



3. 위임사무/법정수임사무 비교

가. 변화 내용

- 위임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 현행 사무체계에서 위임사무 및 공동사무의 비율이 2.6%였으나, 새로운 사무구분체계에서 법정수임사무는 1.0%로 분석됨
- 이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임

나. 변화요인 분석

- 단체위임사무는 모두 자치사무로 구분
-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만 법정수임사무로 구분
- 공동사무의 경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구분
 - 법정수임사무의 수가 위임사무 및 공동사무의 수보다 적음

사무구분		사무수	비율(%)
현행 사무구분	위임사무(국가→광역)	766	61.1
	위임사무(국가→기초)	237	18.9
	위임사무(국가→광역+기초)	43	3.4
	재위임(국가→광역→기초)	52	4.2
	위임(광역→기초)	119	9.5
	공동사무(국가+광역)	16	1.3
	공동사무(국가+기초)	5	0.4
	공동사무(국가+광역+기초)	8	0.6
	공동사무(광역+기초)	7	0.6
	소계	1,253	100
새로운 사무구분	국가→광역	261	65.6
	(국가→기초)+(광역→기초)	137	34.4
	소계	398	100

제 5 장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법령 재정비

제1절 지방이양사무 발굴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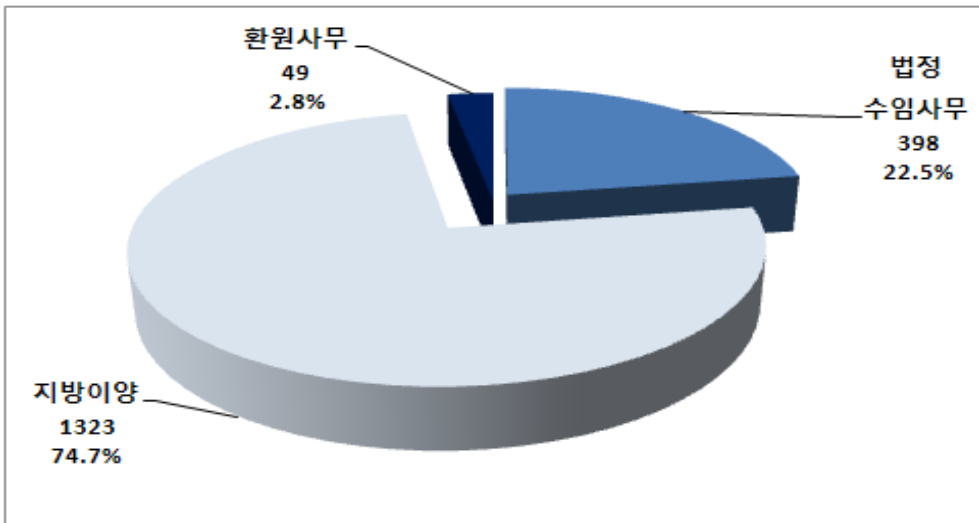
제5장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법령 재정비

제1절 지방이양사무 발굴

1. 사무재분류 현황

가. 종합

구분	사무변화 유형			
	법정수임사무	지방이양	환원사무	총계
사무수	398	1,323	49	1,770
비율(%)	22.5	74.7	2.8	100.0



○ 특징

- 현재사무 구분체계에서 새로운 사무구분체계로 전환될 때, 변화된 총 사무 수는 1,770개인데, 그 중 지방사무로 이양된 것이 1,323개(74.7%)로 가장 많고 환원된 사무는 49개(2.8%)개임
- 국가사무 혹은 위임사무가 집중적으로 지방에 이양된 것으로 나타남

○ 변화요인 분석

- 국가사무 혹은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비율이 기초사무에 비해 높은 것은 국가사무의 광역단위에서 집행상의 효율성, 광역단체가 처리함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나. 이양사무의 분석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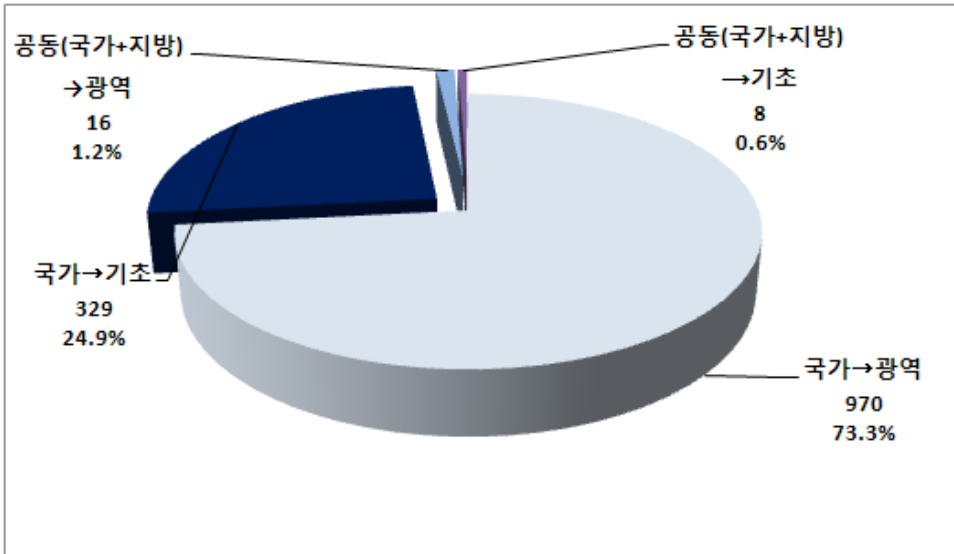
구 분	국가 → 광역	국가 → 기초	공동(국가+지방) → 광역	공동(국가+지방) → 기초	총계
사무수	970	329	16	8	1,323
비율(%)	73.3	24.9	1.2	0.6	100.0

○ 특징

- 총 이양 사무는 1,323개 이고, 그 중 970개(73.3%)는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329개(24.9%)는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16개(1.2%)는 공동(국가+지방) 사무에서 광역사무로, 8개(0.6%)는 공동(국가+지방)사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변화요인 분석

- 지방분권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반영됨



1-1)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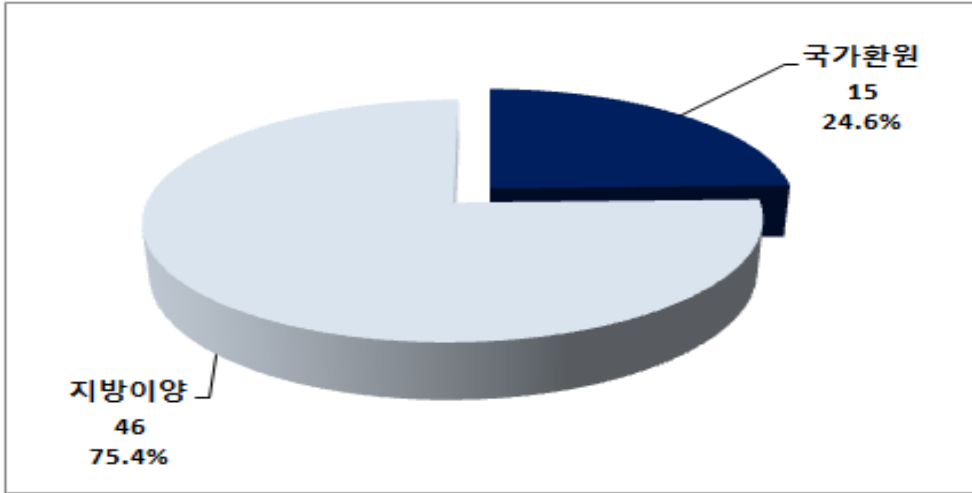
구분	국가환원 (국가직접)	지방이양 (광역시+기초)	법정수임사무 (국가법정수임+ 지방법정수임)	총계
사무수	15	46	0	61
비율(%)	24.6	75.4	0	100.0

○ 특징

- 현행 사무구분체계에서 변화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전체 단위사무 43,422개 중 61개(0.14%)임
- 변화된 사무 중 75.4%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정수임사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란 의견은 한 건도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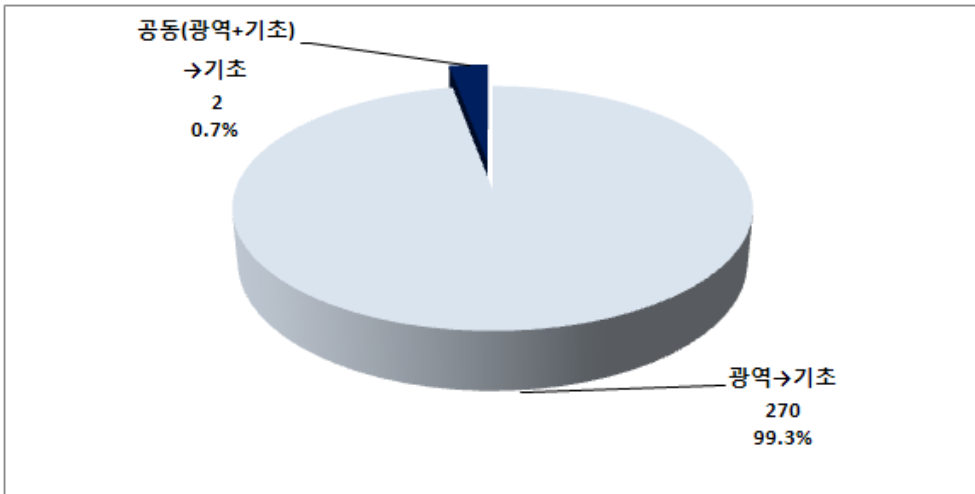
○ 변화요인

- 지방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게 함이 지방자치의 이념상 적합하다는 종래의 견해가 반영되어 상당 부분 지방이양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특별행정기관 사무 중 61개(3%)만 변화되었으므로 추후 좀 더 적극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함



2) 광역사무의 기초이양

구 분	광역→기초 이양	공동(광역+기초)→ 기초이양	총계
사무수	270	2	272
비율(%)	99.3	0.7	100.0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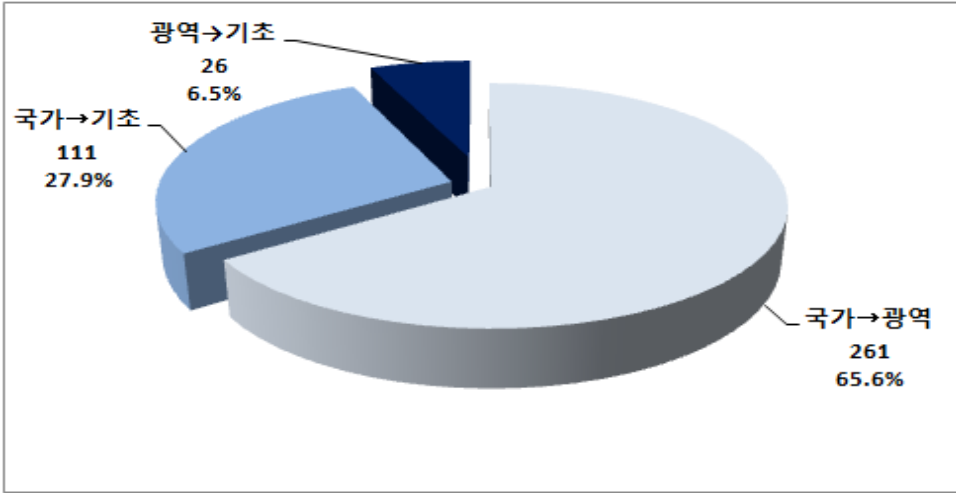
- 변화된 광역/공동(광역 - 기초)사무는 272개 이고 그 중 270개(99.3%)는 광역 자치단체 사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2개(0.7%)는 (광역 - 기초) 공동 사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변화요인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 의지를 강하게 반영함

다. 법정수입사무의 분석

사무구분	사무수	법정수입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국가 → 광역 법정수입사무	261	65.6	0.6
국가직접 → 광역	36	9.0	0.1
국가위임 → 광역	200	50.3	0.5
국가공동 → 광역	1	0.3	0.0
광역직접 : 국가 → 광역수입	21	5.3	0.0
기초직접 : 국가 → 광역수입	2	0.5	0.0
지방공동 : 국가 → 광역수입	1	0.3	0.0
국가 → 기초 법정수입사무	111	27.9	0.3
국가직접 → 기초	8	2.0	0.0
국가위임 → 기초	99	24.9	0.2
국가공동 → 기초	3	0.8	0.0
광역직접 : 국가 → 기초수입	1	0.3	0.0
광역 → 기초 법정수입사무	26	6.5	0.1
광역직접 → 기초	1	0.3	0.0
광역공동 → 기초	3	0.8	0.0
국가직접 : 광역 → 기초수입	3	0.8	0.0
국가위임 : 광역 → 기초수입	3	0.8	0.0
광역위임 : 광역 → 기초수입	16	4.0	0.0
총계	398	100	0.9
총 사무수	43,422	-	100.0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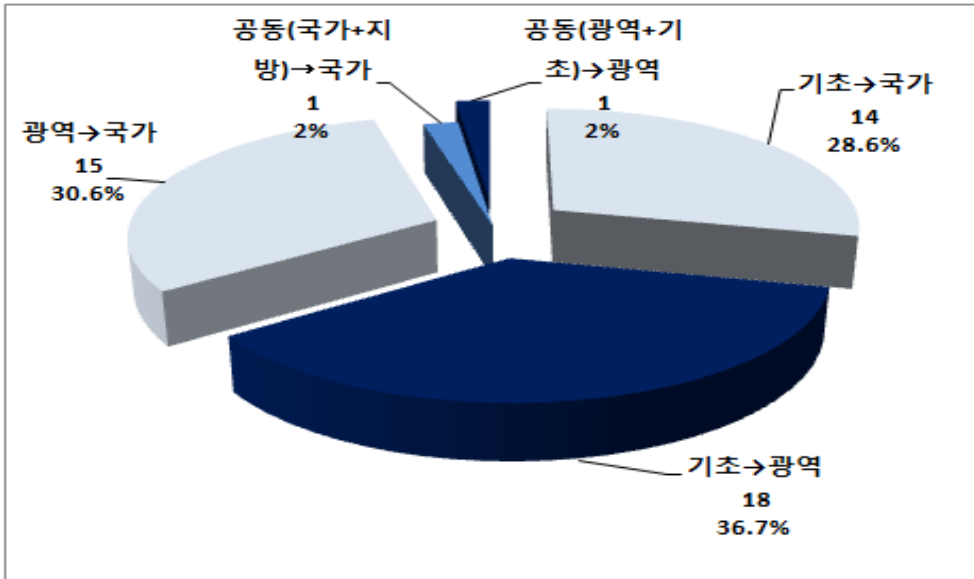
- 총 법정수입사무 398개 중 국가 → 광역 법정수입사무는 261개(65.6%), 국가 → 기초 법정수입사무는 111개(27.9%), 광역 → 기초 법정수입사무는 26개 (6.5%)임
- 총 사무수 43,422개에 대한 법정수입사무의 비율은 0.9%로 낮게 나타남

○ 변화요인

- 위임사무가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종래의 견해가 반영되어 지방이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높고, 주민관련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입 사무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반영됨

라. 환원사무의 분석

구 분	기초→국가	기초→광역	광역→국가	공동(국가+지방) →국가	공동(광역+기초) →광역	총계
사무수	14	18	15	1	1	49
비율(%)	28.6	36.7	30.6	2	2	100.0



○ 특징

- 총 환원사무 49개 중 기초사무에서 광역사무로 환원된 것은 18개(3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광역 사무 중에서 국가로 환원된 것이 15개(30.6%)임
- 변화된 사무수 2,016개 중 환원사무는 49개로 2.4%를 차지함

○ 변화요인

- 전체 변화된 사무수 중 환원사무로의 재분류 비율이 2.4%정도를 차지한 것은, 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처리해 본 결과 환원이 효율적이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써,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무의 처리에 있어 지자체의 처리능력, 인력, 자원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후속 조치

1. 법령 정비

- 현행 사무배분법제의 문제점
 - 국가사무의 과다
 - 위임사무에 의한 통제
 - 현실상 사무구분의 모호
 - 재정적 조치의 불충분

- 개선방향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가칭)법정수임사무의 두 가지 사무를 수행
 - 현재의 자치사무는 그대로 존속
 -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
 -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는 자치사무로, 일부는 국가 사무로 환원하고 일부는 (가칭)법정수임사무로, 일부는 폐지하거나 민영화
 -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갖는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독권을 (가칭)법정수임사무에서는 없앴
 - 각각의 사무에 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일반원칙, 기본유형, 절차 등을 명확히 함
 - (가칭)법정수임사무에 관한 지방의회의 관여(조례제정권, 감사권, 조사권 등)를 인정
 - (가칭)법정수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은 전액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
 - (가칭)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대집행, 취소, 정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사무구분체계의 재편성 : (가칭)법정수임사무의 도입
 - 기존 우리나라의 국가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체계를 재편

2. 인력 및 자원 조정

- 사전평가의 실시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집행의 비용을 사무이양 시 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함
 - 사무이양 추진절차, 행정기관의 재산처분, 인력 등 정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제정하는 것이 필요

- 이양권한의 고려
 - 행정권한 이양 시 재원의 보전은 이양된 권한과 새로운 권한의 배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지출비용의 증가·감소에 대한 지출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총괄지원 안을 세워 이 결과에 따라 세제수입과 교부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등 검토 필요

- 해당 지자체의 입장 반영
 -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 자치사무를 실제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산출

- 교부세, 포괄보조금제도의 활용
 - 사무이양에 따른 보통교부세율 상향 조정, 포괄보조금제도의 신설에 의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는 방법 고려할 수 있음

- 인력 및 자원 조정의 한계
 - 예산편성이 기능별로 편성되는 것과 달리 단위사무별로 투입예산을 산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추후 보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 6 장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제1절 사업 추진 목적

제2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제3절 법령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제4절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제6장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제1절 사업 추진 목적

- 2009년도에 구축된 법령사무총조사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와 법령사무DB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기초 준비과정
 - 연구진 및 관리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의 입력 시스템 구성 및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오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
 - 소수 연구진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법령입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에 입력
 - 법령사무DB시스템 구축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준비 작업 실시

-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 법령사무총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 입력단계에서 연구진 및 관리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실시
 - 기타 필수적인 기능에 대한 추가 및 수정을 통해 연구진관리자의 편의성 도모

- 법령 데이터베이스 입력방식 변경 및 고도화
 - 기존에 사용하던 법령 데이터베이스 입력방식(수작업)을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입력 실시
 - DB 테이블 정규화 작업 실시 및 스키마 수정을 통한 무결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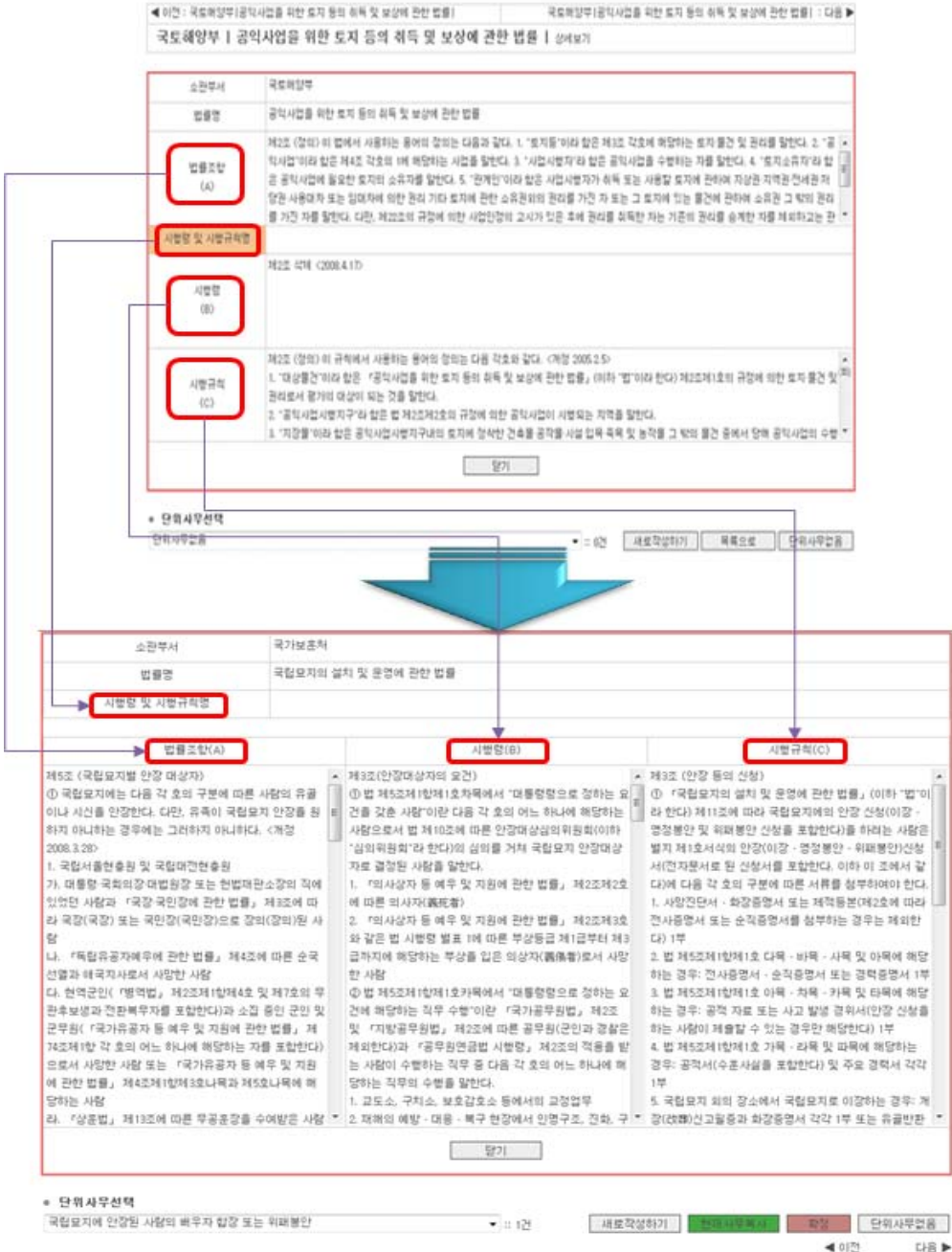
-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 최종 목표시스템(법령사무DB시스템)의 통계 및 검색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용성 확장 및 개선

- 국기기관 · 지방정부 · 대국민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준비

제2절 사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1. UI(User Interface) 변경

- 기존 사무DB 입력시스템에서 세로로 구성되어 스크롤 증가, 사용자 불편 초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가로보기로 UI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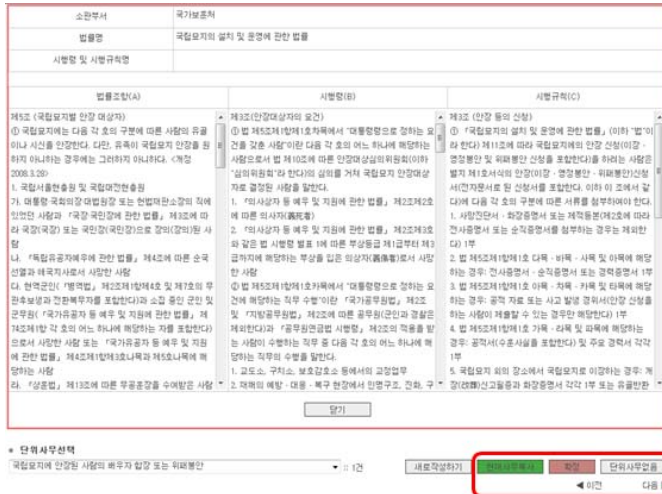


<그림 6-1> 법률보기 UI 전환

- 법률조항의 띄어쓰기 및 정렬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부분을 법률입력 시스템화 실시로 정렬 및 해소, UI 개선

2. 연구진 / 관리자 편의기능 추가 구현

- 연구진이 사무배분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필요한 각종 편의기능 추가
 - 현재사무복사 : 현재 선택되어 있는 사무를 그대로 복사하여 처리권자(국가, 광역, 기초) 등과 같은 내용이 약간 변경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추가 구현
 - 확정버튼 : 해당 법률에서 기존 사무와 현재사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도록 버튼 생성
 - 이동버튼 : 법률확인 결과 사무작업이 완료된 현재 법률에서 이전 법률 및 다음 법률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추가해 입력 편의성을 도모함
 - 보류버튼 : 현재 작업하고 있는 법률의 단위사무가 확정적이지 않고, 회의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도록 추가된 기능



<그림 6-2> 편의기능 추가

○ 시스템 관리자가 작업현황을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한 기능 구현

- 이력보기 기능 : 사무 작업을 완료한 연구진의 입력일, 이름, 작업내역이 파악 가능하도록 신규 구현
- 단위사무 통계 : 부처별 총 작업량과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진별로 보완결과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페이지 추가
- 단위사무 수정 확인 기능 : 연구진이 작업한 법률의 단위사무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 가능하도록 작업된 사무(수정, 추가, 확정 등)는 검정색으로 표현, 작업하지 않거나 확정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사무는 붉은색으로 표현 가능하도록 구현

The screenshot shows a table with columns: 소관부서, 법률명 또는 시행령/규칙의 명칭, 법률조항, 단위사무, 단위사무명, and 업무. A modal window titled '단위사무 작업이력' is overlaid on the table, showing columns for 작업, 작업일, and 작업자. The '작업' column contains '수정' and the '작업일' column shows '2010-10-22 12:08:23'. The '작업자' column shows '전성훈'.

소관부서	법률명 또는 시행령/규칙의 명칭	법률조항	단위사무	단위사무명	업무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산교육의 실시 등) ..	1건	[이력] 등산교육 실시 및 위탁..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한국등산지원센터 ..	1건	[이력]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 ..	8건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이력]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미..	[등록]

<그림 6-3> 이력보기 기능

농림수산식품부 > 통계

단위사무 보완결과

'09 단위사무	'10 법률조항	'10 검토완료	검토율	총계	신규	수정	삭제	기본추가	기본삭제	변동없음
3015	2109	2109	100%	2971	1093	1665	876	13	274	213

주1: 총계 = ('09 단위사무) + 신규 + 기본추가 - 삭제 - 기본삭제
 주2: 기본삭제: 2010년도 법령 폐지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된 단위사무의 수

연구진별 보완결과

이름	총 법률 건수	작업율	신규	수정	삭제	변동없음
오희환	2111	100%	598	979	672	13
김성현	876	100%	174	203	46	187
김필두	290	100%	20	86	31	1
전성훈	723	100%	301	397	127	12

부처별 보완 결과

년도	총계	법국가사무				지방사무			
		계	국가사무	위임사무	국가+지방	계	광역사무	기초사무	광역+기초
2009	3015	2026	1727	104	195	989	408	553	28
		67.2	57.28%	3.45%	6.47%	32.8%	13.53%	18.34%	0.93%
2010	2971	1930	1717	90	23	1141	505	629	7
		61.6	57.79%	3.03%	0.77%	38.4%	17%	21.17%	0.24%
		-196	-10	-14	-172	152	97	76	-21

<그림 6-4> 단위사무 통계 페이지

○ 기타 수정사항

- DB 스키마 수정 : 기존 법률입력 방식의 변경으로 법률입력을 위한 테이블 추가 및 사무DB 입력시스템의 DB 스키마 수정
- 기타 오류사항 수정 : 이동버튼 클릭 시 발생하는 문제점, 법률 및 사무 검색 시 발생하는 오류, 단위사무 등록 키 추가, 기타 키의 오류값 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페이지 수정

제3절 법령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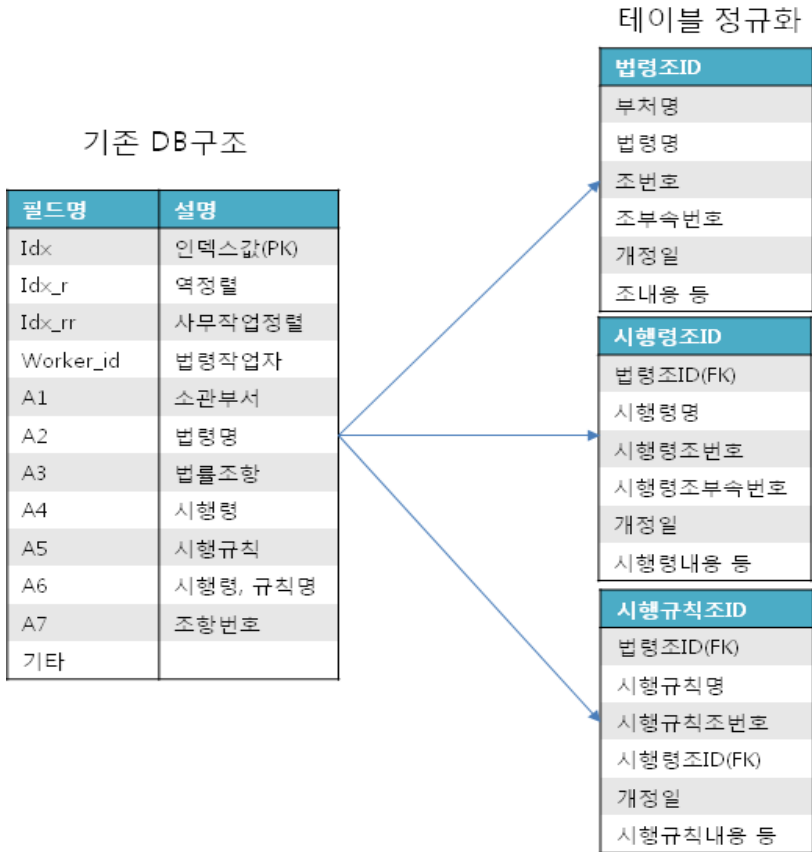
1. 기존 법령입력 작업의 문제점 도출

- 기존 법령입력은 소수 연구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정, 제정, 폐지를 수작업으로 진행
- 상기 입력과정 중에서 법령입력 연구진은 법률 변화에 대한 육안식별과 복사붙여넣기 작업을 병행하여 법령데이터에 오류 발생 및 법률 데이터 무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또한 데이터 입력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법률이 입력되는 등 사무배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법령입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법률 데이터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단위사무 입력시스템의 UI 변경과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시키는 등 법령입력과 정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

2. 법령데이터 입력 고도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3단보기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 후 테이블 정규화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법령입력작업으로 전환
-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법령입력 구조를 자동화된 구조로 개선하여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및 UI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 실시

-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사무총조사 입력시스템 DB의 법령 3단보기 일치화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하여 원천적 차단
- DB 스키마 구조의 변경 및 테이블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법령사무DB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그림6-5>
- 총 40개 부처 71,866건의 법령을 DB로 입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3단보기 DB와 일치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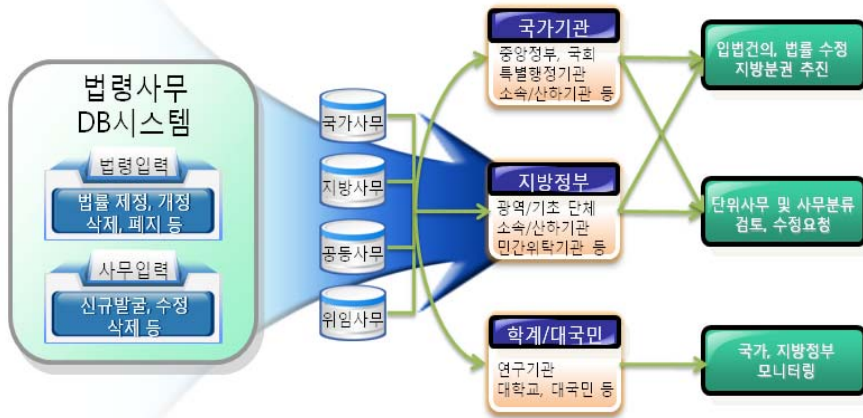
<그림 6-5> DB 테이블 정규화

부처명	조문수	부처명	조문수
국토해양부	10091	병무청	156
보건복지부	4173	산림청	708
노동부	2689	중소기업청	782
농림수산식품부	4000	통계청	185
소방방재청	1222	금융위원회	2651
농촌진흥청	70	해양경찰청	252
국가보훈처	752	경찰청	981
특허청	1153	기상청	143
문화체육관광부	1844	방송통신위원회	1106
문화재청	245	여성부	680
환경부	2346	통일부	278
지식경제부	4610	기타	353
교육과학기술부	4519	공정거래위원회	557
행정안전부	6018	관세청	43
기획재정부	3976	국가인권위원회	79
법무부	10273	국무총리실	190
외교통상부	732	국민권익위원회	179
방위사업청	50	국방부	3405
조달청	220	국세청	50
법제처	72	식품의약품안전청	33
계 : 71,866			

제4절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1. 시스템 고도화 컨셉 설정

- 국가기관 · 지방정부 · 대국민을 위한 단위사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을 본 시스템의 컨셉으로 설정하고 기존 법령사무DB시스템을 고도화
 - 법령사무DB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지방분권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 국가기관 · 지방정부 · 대국민이 같이 사용하여 단위사무에 대한 계속적 보완, 추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국가 행정체제 구축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본 시스템의 컨셉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그림 6-6>과 같이 설정
 - 단기적인 DB 구축사업이 아닌 매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DB 서비스를 구현



<그림 6-6> 시스템 고도화 컨셉 및 서비스 네트워크

2. 주요 요구사항(CSF; Critical Success Factors) 분석

- 법령사무DB시스템의 사용자별 공개수준 설정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 사용자에게 강력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각종 리포트, 보고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위원회 등에서 법령사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검색 및 활용가능하도록 서비스 구현
 - 국가기관 · 지방정부 · 대국민 사용자는 단위사무 및 유형에 대하여 일반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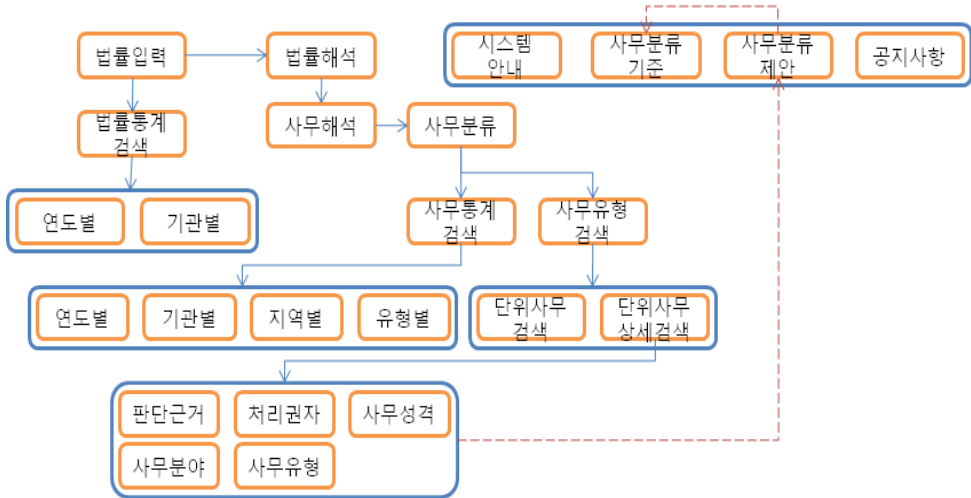
- 기존 시스템의 보완 및 고도화
 - 전 부처 및 특정부처의 조합된 단위사무 통계기능 제공
 - 법령과 관련한 통계 자료 제공
 - 단위사무 각 분야별(단위사무 처리권자, 성격, 유형 등) 조합된 통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검색시 선택버튼의 기능 다양화 및 결과내 검색 기능 추가
 - 리포팅 틀에 기반한 프린트 디자인 구현

- 시스템 안내 및 FeedBack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
 - 법령사무DB시스템 구축 목적, 사용방법 안내 등의 시스템 안내 페이지 추가
 - 국가기관 · 지방정부 · 대국민 사용자가 분류된 단위사무에 대한 각종 제안,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시스템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3. 기능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 법령사무DB시스템의 기능 구현은 단위사무 입력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각종 기능을 도출하였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Feedback이 가능하도록 프레임 워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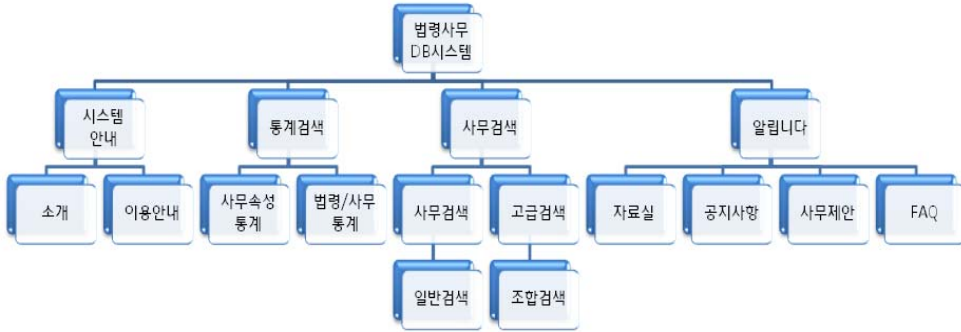
- 단위사무 입력 프로세스 및 기능구현 프레임워크는 <그림6-7>과 같음



<그림 6-7> 기능구현 프레임워크 설정

4. 법령사무DB시스템 사이트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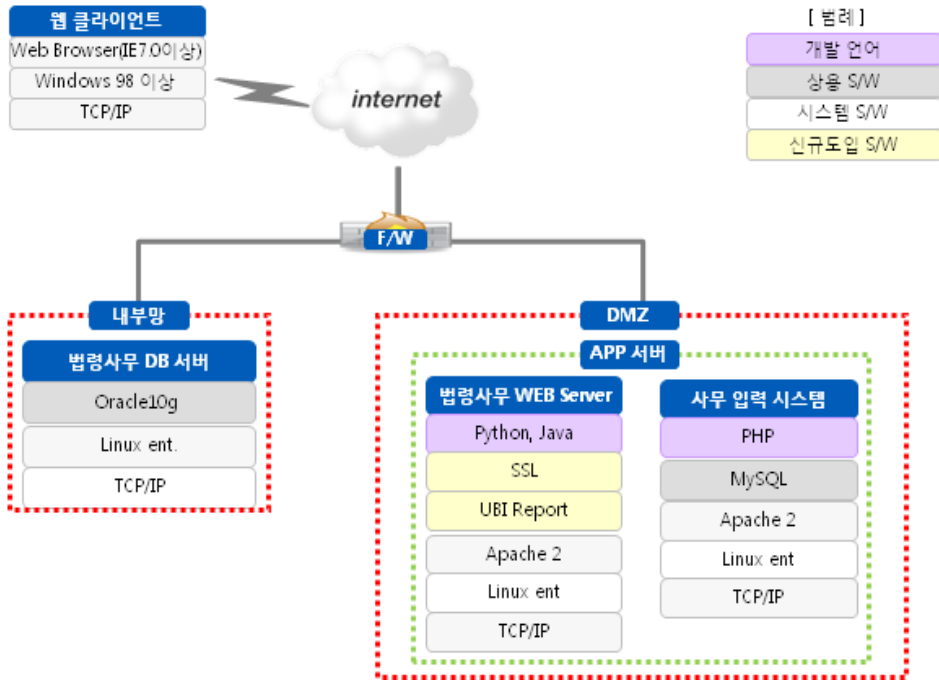
- 법령사무DB시스템의 사이트맵 구성은 기능구현 프레임워크에서 도출된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
- 시스템 안내, 통계, 단위사무 검색, 정보마당으로 각 요소별로 분류하여 <그림 6-8>과 같은 사이트 맵을 구성



<그림 6-8> 사이트맵 구성

5. 시스템 구조

- 법령사무DB시스템 클라이언트의 사양은 웹 브라우저 IE 7.0이상, Windows 98 이상의 사양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구현
- 법령사무DB시스템의 구조는 DB서버와 WEB APP서버로 분리되어 있으며, 방화벽을 통하여 네트워크간 분리(NAT) 되어 있음
- WEB APP서버에서는 법령사무DB시스템과 사무입력시스템이 웹서비스를 위해 DMZ 상에서 운영되고 있음
- DB서버는 내부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사무DB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구축되었음
- 법령사무DB시스템의 구조 및 개발언어는 다음의 <그림 6-9>와 같음



<그림 6-9> 시스템 구조

6. 시스템 개발 현황

- 법령사무DB시스템은 4개(시스템안내, 통계검색, 사무검색, 알립니다)의 대분류로 메인 네비게이션이 설계되었음
- "시스템안내"는 법령사무DB시스템 소개, 찾아오는 길의 중분류로 구성됨
- "통계검색"은 부처별 속성통계, 법령통계로 중분류되어 있으며, 단위사무의 속성에 대한 수치를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서비스하고, 각 부처별 법령수 및 사무수를 표로 나타냄

- "사무검색"은 부처별 검색과 조합검색으로 중분류하고, 각 부처별 단위사무에서 부처별 단위사무에 대한 내용, 법 조문보기로 구성
- 대분류 "사무검색"의 조합검색은 부처별 단위사무의 속성에 대한 조합된 검색결과를 제공하며, 행정안전부 및 연구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
- "알립니다"는 공지사항, 자료실, FAQ, Q&A, 사무제안의 게시판으로 운영되며, 사무에 대한 피드백 및 각종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그림 6-10> 시스템 개발 현황

제 7 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건의



제7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건의

1. 연구결과의 활용

- 현행체계에서의 법령상 사무배분 실태 파악
 - 각 중앙부처별 법령상 사무배분의 실태 파악
 - 각 중앙부처별 법령상 배분사무의 중앙과 지방간 처리비율 파악
 - 법령상 사무의 성격별 배분실태 파악
 - 법령상 단위사무의 흐름(중앙 → 지방) 파악
- 지방자치 관련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을 위한 사무배분 실태 분석
 -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사무배분 실태 분석
 - 현재의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분권과 사무이양의 실태 파악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비율 파악
 - 국가사무의 구성내역과 구성비율 파악
 -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구성내역과 구성비율 파악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조직진단의 기초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시 사무의 흐름도(중앙 → 광역 → 기초) 파악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
 - 지방자치 혹은 지방행정 전공 교수 연구자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2. DB의 활용

- 조사결과의 Data-Base화로 단위사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법령 변화(제정, 개정, 삭제, 폐지)에 따른 단위사무의 변화 관리
- 지방분권의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정부업무의 효율적 지원, 정부 업무수행 모니터링,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단위사무 분석을 통한 법률 제정, 개정, 폐지 등 정부 및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 국가 - 지방정부 - 대국민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국가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
-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구현
- 국가의 전체 사무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3. 정책건의

- 연구결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연구지원 기반 마련 필요
 - 연간 30%이상 법률변화에 따른 사무수 변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매년 변동된 법률에 대한 단위사무 업데이트 필요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연구지원, 사무관리를 위한 법령사무조사센터 설치 및 상근 인력 필요

<참고> 법령상 사무 총조사 업무의 지속적 지원방안

1. 지원근거 및 타당성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01) 통과로 지방분권가속화 및 관련 사무규정 필요
 - 국가지방의 단위사무 이양 및 배분이 원활히 되기 위한 DB 구축 필요
 - 과학적인 행정체제 구축 및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 제6조(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제2항,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의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 제38조(사무배분의 원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배분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1-2 지방분권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1-2-6; 지방행정체제 개편, 1-2-7; 지방정부권한 확장, 1-2-8; 광역경제권 구축)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계층구조 단순화 및 규모의 적정화 산출을 위한 단위사무 데이터 필요
 - 지방정부 권한 확장을 위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
 - 기존 기관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한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마련 및 법률 정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필요 및 정책수립의 과학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단위사무 체계적 구축 필요
 -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필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1 성과를 창출하는 지능형 행정체계 확립(4-1-1; 지식정보의 범정부적 유통·활용 활성화)
 - 수요가 높고, 활용가치가 큰 오프라인 상의 지식정보 및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DB화를 통한 지식 공유 기반 확장에 기여, 스마트 정부 구현

2. 지원방법

- 전자정부 전략사업으로 지원
 - IT기반의 정부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19개 과제, 1천304억원 예산 확보
- 정보화 촉진기금 활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 행정안전부 사무총조사 소관부서 발주 용역사업
 - 소관부서인 선거의회과가 자체 용역재원을 확보하여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

3. 소요예산

가. 2011년도 소요예산 : 818,020천원

- 단위사무 DB 구축 인건비 : 385,020천원
 - 객원연구원(박사급) : 2,000,000원 × 20명 × 9개월 = 360,000,000원
 - 연구보조원(석사급) : 1,390,000원 × 2명 × 9개월 = 25,020,000원
- 시스템 구축 : 385,000천원
 - DB 구축용 시스템(웹 기반) 구축 : 1식 15,000천원
 - 법령 사무DB 시스템 구축 : 1식 200,000천원
 - H/W 및 S/W 구입
 - H/W : 100,000천원(서버(4식), L4, L3스위치, 방화벽, 보안장비 등)
 - S/W : 70,000천원(DBMS, 검색엔진, 리포팅 툴, 보안솔루션 등)
- 회의비 : 48,000천원
 - 자문회의비 : 2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원
 - 자문 수당 : 20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0원
 - 연구진회의비 : 2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원

나. 2011년도 이후 소요예산 : 매년 548,520천원

- 인건비 100% : 385,020천원 + 회의비 48,000천원 + 시스템 구축 예산의 30% : 115,500천원

- 법령사무DB시스템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비전, 목표, 고도화 등이 반영된 향후 시스템 운영, 관리계획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간 예산계획의 수립,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법령사무DB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으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법령사무DB시스템 운영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초DB구축, 서비스 기반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스템 연계	법령사무DB센터 운영
계획기간	2009~2010	2011 ~ 2013	2014 ~ 계속
단계별 목표	법령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서비스 기반구축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법령사무 DB센터 운영
사업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집단 조사 •DB 입력시스템 구축 •웹 기반 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와 DB 연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협업기반 구축 •법령사무DB센터 시범 시스템 구축 운영 •서비스 모델(법령사무 DB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공동 협업 •법령사무DB센터 인력 충원 및 정식 서비스 오픈 •모바일 등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관리

- 사무이양 심의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업 필요
 - 단위사무의 지방이양, 사무분류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단위사무 심의기관(지방분권촉진위원회)과의 공동협업 및 연구 필요
 - 연구진 및 심의기관이 공동으로 사무분류를 할 수 있는 통합연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4. 향후 연구과제

- 사무배분기준의 보완
 - 법률용어의 통일과 명확한 개념정의 필요 : 행정법학자 도움 필요
 - 사무의 성격(내용/목적/형태) 판단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사무조사 범위 확대 필요
 - 위(중앙정부)로 부터의 사무조사가 가지는 미흡한 점을 아래로부터(지방)의 사무조사로 보완
 - 법령에는 없는 조례나 규칙에 명시된 사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사무의 정확한 재위임 과정 규명

- 지방분권추진단과의 시스템 공유
 - 지방분권추진단과 사무총조사 DB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이양사무 등에 대한 실시간 검토 실시

부 록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국가사무>

부처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공사무				총계
	국가직접 처리사무	국가 > 특별지방 행정기관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신하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소개	국가 > 광역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 단체장 + 기초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 단체장 + 기초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 단체장	국가+광역 자치단체 (장)+기초 자치단체 (장)	국가+광역 자치단체 (장) 자치단체 (장)	국가+기초 자치단체 (장)	소개	
경찰청	86	237	100	10	3	436	1					1				0	438
공정거래위원회	205			1	1	207	8					8				0	215
관세청	4					4						0				0	4
교육과학기술부	1254	2	92	24	15	1387	30	2				32		2		2	1421
국가보훈처	250	156	2	17	5	430						0				0	430
국가인민위원회	26					26						0				0	26
국무총리실	86					86						0				0	86
국민권익위원회	78					78						0				0	78
국방부	782	3	390	6		1181						0				0	1181
국토해양부	2928	528	169	367	69	4061	334	73	35	9	451	2	2	4	4	4516	
금융위원회	635		40	33	139	847						0				0	847
기상청	46				4	50						0				0	50
기타	67		15			82						0				0	82
기획재정부	997	427	47	46	7	1524	12	12		14	38	0				0	1562
노동부	429	257	9	172	15	882	1	1			2			1		1	885
농림수산식품부	1133	17	398	136	46	1730	48	38	2	1	89	4	4	4	4	4	1824
농촌진흥청	22		32			54					0					0	54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부처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총계
	국가직접 처리사무	국가 > 특별지방 행정기관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산하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소계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소계	국가+광역 자치단체(장)	국가+기초 자치단체(장)	소계	
문화재청	107	1		4		112	13			13	1		1	126	
문화체육관광부	666		96	47	17	826	3			3			0	829	
방송통신위원회	257	3	12	87	5	364				0			0	364	
방위사업청	1		2			3				0			0	3	
법무부	3033	150	1330	60	13	4586				25			0	4611	
법제처	49					49							0	49	
병무청	54	51	9			114				0			0	114	
보건복지부	1147	90	75	90	40	1442	29		14	8	2	8	12	1544	
산림청	248	144	68		7	467	33		26	59			0	526	
소방방재청	436	49	21	28	5	539	7			7			0	546	
여성가족부	234			8		242	7		5	12			0	254	
외교통상부	297		1	11	3	312				0			0	312	
조달청	126		6			132				0			0	132	
중소기업청	308	9			40	357	3			3		1	1	361	
지식경제부	1563	33	187	160	40	1983	69	3		72	1	1	2	2057	
통계청	101	3	3			107	4			4			0	111	
통인부	118				7	125	1			1			0	126	
특허청	355		30		1	386	4			4			0	390	
해양경찰청	59	38	6			103				0			0	103	
행정안전부	1621	58	193	108	13	1993	36	4	1	42	2		2	2037	
환경부	681	225	58	75	20	1059	123	11	10	144			0	1203	
총계	20489	2481	3391	1490	515	28366	766	237	52	43	8	16	29	29493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지방사무>

부처	광역사무					기초사무					공공사무		총계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 소속기관	광역자치단체 > 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초자치단체 >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 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소계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소계
경찰청	4				1	6					6		0	11
공정거래위원회	32				3	21					21		0	56
관세청						0					0		0	0
교육과학기술부	509	70	1		4	171					171		0	755
국가보훈처	46				2	46					46		0	94
국가인민위원회	1					1					1		0	2
국무총리실	23					23					23		0	46
국민권익위원회	41					20					20		0	61
국방부	19					22					22		0	41
국토해양부	1531	10	48	11	56	1393	3	5	10	2	1413		0	3069
금융위원회	17			1		1					1		0	19
기상청						0					0		0	0
기타						0					0		0	0
기획재정부	61					57					57		0	118
노동부	70			1	1	68			1		69		0	141
농림수산식품부	494	7	2	5	13	628	7	1	4		640	1	1	1162
농촌진흥청	5					5					5		0	10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부처	광역사무						기초사무						공동사무		총계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 소속기관	광역자치단체 > 신하기관	광역자치단체 > 민관위탁기관	광역자치단체(정) > 기초자치단체(정)	소계	광역자치단체 > 소속기관	광역자치단체 > 신하기관	광역자치단체 > 민관위탁기관	기초자치단체(정) > 광역자치단체(정)	소계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소계		
문화재청	40					40					45		0	85	
문화체육관광부	284	4		3	4	295	1	4			250	2	2	547	
방송통신위원회	12			3		15	4				4		0	19	
방위사업청						0					0		0	0	
법무부	75	1				76	107				107		0	183	
법제처	1					1	1				1		0	2	
병무청	8					8	7				7		0	15	
보건복지부	543	8		7	6	564	11	1	13		775		0	1339	
신림청	141				4	145	117				117		0	262	
소방방재청	358	41		4	6	409	219	1			220		0	629	
여성가족부	139			2		141	157	2			159		0	300	
외교통상부						0					0		0	0	
조달청	24					24	24				24		0	48	
중소기업청	98			3		101	84				84		0	185	
지식경제부	294	1	1	20	1	317	308	9			317	2	2	636	
통계청	40				1	41	25				25		0	66	
통일부	5					5	7				7		0	12	
특허청	2					2	2				2		0	4	
해양경찰청	7	8				15	33				33		0	48	
행정안전부	1490	38	17	1	9	1555	1349	6			1399	2	2	2956	
환경부	526	1	1	2	8	538	468	2			470		0	1008	
총계	6940	189	71	62	119	7381	6414	26	49	2	6541	7	7	13929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 국가사무>

	국가사무					법정수입사무			국가계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법정수입사무	
경찰청	82	193	118	7				400	
공정거래위원회	203		1	1				205	
관세청	4							4	
교육과학기술부	1248	1	114	15	8			1386	
국가보훈처	249	106	18	5				378	
국가인권위원회	26							26	
국무총리실	86							86	
국민권익위원회	78							78	
국방부	782	3	396					1181	
국토해양부	2539	314	509	74	55	12		3503	
금융위원회	636		72	139				847	
기상청	46			4				50	
기타	67		14					81	
기획재정부	996	429	92	7	12	10		1546	
노동부	415	145	168	15		3		746	
동림수산식품부	1111	18	537	46	27	25		1764	
동춘진흥청	18							18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		국가계
	국가직편처리사무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경찰청	82	193	118	7			400
공정거래위원회	203		1	1			205
관세청	4						4
교육과학기술부	1248	1	114	15	8		1386
국가보훈처	249	106	18	5			378
국가인권위원회	26						26
국무총리실	86						86
국민권익위원회	78						78
국방부	782	3	396				1181
국토해양부	2539	314	509	74	55	12	3503
금융위원회	636		72	139			847
기상청	46			4			50
기타	67		14				81
기획재정부	996	429	92	7	12	10	1546
노동부	415	145	168	15		3	746
농림수산식품부	1111	18	537	46	27	25	1764
농촌진흥청	18						18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 지방사무>

	지방사무-광역					지방사무-기초					법정수임사무			총계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 소속기관/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광역자치단체사 무(50만0이상)	소계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 소속기관/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광역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소계	광역자치단체(정) > 기초자치단체(정)	소계	소계	
경찰청	21	3			24	21	3			24		0	48	
공정거래위원회	40				40	26				26		0	66	
관세청					0					0		0	0	
교육과학기술부	547	68	1		616	174				174		0	790	
국가보훈처	99				99	47				47		0	146	
국가안전위원회	1				1	1				1		0	2	
국무총리실	23				23	23				23		0	46	
국민권익위원회	41				41	20				20		0	61	
국방부	19				19	22				22		0	41	
국토해양부	2107	136	10		2253	1789	15	24		1828	1	1	4082	
금융위원회	15		1		16	3				3		0	19	
기상청					0					0		0	0	
기타					0					0	1	1	1	
기획재정부	75				75	59				59		0	134	
노동부	199	1	1		201	76	2	1		79		0	280	
농림수산식품부	525	10	5		540	665	9	4		678	3	3	1221	
농촌진흥청	41				41	5				5		0	46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지방사무-광역				지방사무-기초				법정수입사무		총계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신하기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광역자치단체 사무(50만이상사)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신하기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신하기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정)	소계	
문화재청	52				52	47			1	1	100
문화체육관광부	269	5	3		277	335	1	4	2	2	619
방송통신위원회	12		3		15	4				0	19
방위사업청					0					0	0
법무부	69	1			70	102	1			0	173
법제처	1				1	1				0	2
법무청	8				8	7				0	15
보건복지부	598	31	7		636	800	19	14	3	3	1472
산림청	272				272	189				0	461
소방방재청	376	40	4		420	228	2			0	650
여성가족부	139	2			141	157	2			0	300
외교통상부					0					0	0
조달청	24				24	24				0	48
중소기업청	106		3		109	86				0	195
지식경제부	335	2	20		357	326		9		0	692
통계청	43				43	27				0	70
통일부	6				6	7				0	13
특허청	6				6	2				0	8
해양경찰청	7	8			15	33				0	48
행정안전부	1559	67	6		1632	1375	50	8	7	7	3072
환경부	561	2	2		565	482		2	8	8	1057
총합계	8196	376	66	0	8638	7163	104	66	26	26	15997

<사무유형 변화비교>

사무유형 현재 - 사무 재배분판정	건수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 - 광역사무로 변화된 건수	970
국가사무 - 기초사무로 변화된 건수	329
광역사무 - 기초사무로 변화된 건수	270
(국가-지방)공동사무 - 광역사무	16
(국가-지방)공동사무 - 기초사무	8
(광역-기초)공동사무 - 기초사무로 변화된 건수	2
계	1,595
(법정수입사무)	
법정수입사무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261
법정수입사무 :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111
법정수입사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26
계	398
(환원사무)	
광역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15
기초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14
기초사무 - 광역사무로 변화된 건수	18
국가(국가-지방)공동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1
지방(광역-기초)공동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0
지방(광역-기초)공동사무 - 광역사무로 변화된 건수	1
계	49

<50만이상 시장사무>

부처	법/시행령	제	내용
국토해양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및 보고(대도시 시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30만제곱미터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10만제곱미터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30만 제곱미터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30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준공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의 경미한 개발행위의 사업시행자 지정(30만 제곱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30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30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30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지정 시 토지의 수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 영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 축은 중요사항 변경을 위한 주민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30만 제곱미터이상) 준공인가신청서의 신고접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가 포함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 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30만 제곱미터 이상)준공인가필증의 교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일반 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부처	법시행령	제33조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의 시설부담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지정권자의 유치지역 우선적 지정·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체 유치 및 임대사업육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협의·고시 및 보고(기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직접 지정·변경 및 보고·열람(기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광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광역, 대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광역, 대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대도시, 광역)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광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광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광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실의 공고와 서류의 열람(대도시, 광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시 고시(대도시, 광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아닐 경우 준공검사(광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아닐 경우 공사완료의 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시 진림로 지역 및 인접지역 포함(기초)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부처	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금 설치(기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및 측량성과 수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반변경 승인신청서접수, 심사 및 결과통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기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정(100만 제곱미터 이상) 승인 요청(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 수립 및 환지방식 도입 시 동의 수렴(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수렴(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 및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변경 수립 시 고시· 송부 및 통보(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통보 및 공람(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및 공동시행자 규약 승인(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신탁개발 승인(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 변경 인가 또는 신고 수리(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제출 수리· 인가 및 의견수렴(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고시 및 송부(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자 지정· 지도· 감독 및 감리내용 보고 수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변경 명령(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상환채권 승인(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선수금 승인(기초)

국토해양부

부처	법시행령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 작성·변경 제출 수리(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한지 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수리(지정관리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및 준공검사 시행·의뢰(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공사완료 공고 및 보안 시공 등 필요 조치 명령(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이전 조성토지등(제비지 제외) 사용 허가(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용부담 요구·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조정 신청(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계획 이외의 추가설치 비용 부담 요청·수익자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가·지정·인가·승인 등 취소 시 청문(기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수렴(기초: 제1항제1호 및 제2항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부단체장의 임면(기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범위의 조례제정(기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요청, 결과 통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기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광역)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진문기판), 평가서초안 작성(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사업계획 변경 평가서초안 제작성·의견제수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부처	법시행령	제	범시행령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평가서 접수, 평가서 제출(이견첨부), 평가서 협의요청(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협의내용 변경 여부 확인, 반영명령, 통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협의내용 이의신청(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평가서 재작성(접수), 재협의 요청(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계획변경 환경보전방안 검토, 환경보전방안 반영여부 확인, 반영명령, 통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관리대상 이행상황 기록·비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접수·통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협의내용 이행상황 승계사유 등 접수(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자료제출 요청, 사업장 출입·조시 등 사업자 협의내용 관리·감독(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사업 착공·준공·종지 접수, 통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사전 공시행 공시중지명령(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재평가 결과 사업자 환경보전 필요조치명령(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사업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 결정·통보(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간이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협의(기초)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평가서 작성·접수·제출(기초)

<공동사무 - 국가>

부처	법률	조항	사무명	공동사무유형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유아교육 관련 업무 위탁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교육비 지원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국가)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등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제17조	설치계획 결정고시, 열람	국가+기초자치단체(장)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국가+기초자치단체(장)
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고용정책의 분석 및 평가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법	제14조	원유검사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법	제21조	낙농어선업 사무 지도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비상대비 농수산물조사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비상대비 농수산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임무고지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시·군·구별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50조	진단 및 치료비 지원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5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보조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부처	법률	조항	사무명	공동사무유형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상 관리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임원조치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명령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 연장 결정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퇴원 조치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보조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13조	정신보건사업 실시	국가+기초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비용 부담	국가+기초자치단체(장)
중소기업청	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상인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국가+기초자치단체(장)
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지식경제부	석탄산업법	제39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계상	국가+광역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협회에 대한 경비의 일부지원 사무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의 부과수수(국가/소속, 산하기관 포함)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공동사무 - 지방>

부처	법률	조항	사무명	공동사무유형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	축사 이전비 등 지원요청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62조	관광진흥법 보상금 지급 등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주간 행사에 관한 사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지식경제부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자체 장의 자금 우선 지원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	사업승인권자의 시행승인내용 보고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95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